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경과보고서
2019년 6월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경과보고서

2019년 6월



TRANSITIONAL
J U S T I C E
WORKING GROUP

전환기정의워킹그룹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옹호그룹입니다.

우리는 아직 억압적 체제로부터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환이 이루어진 사회 모두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참상과 유린에 대응하여 책임추궁에 앞장서는 기관 및 개인들과 협력하고 우리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자와 연구진

- Sarah A. Son 연구팀장
- Dan Bielefeld 기술팀장·프로젝트책임
- 양혜린 연구원
- 이영환 대표
- 오세혁 전 선임연구원
- Scott Stevens 커뮤니케이션팀장
- 최유립 커뮤니케이션담당관
- 신희석 연구원
- 윤다예 기술담당관
- Christina Elise Olesen 연구펠로우

표지 그림

“무제”, 강춘혁 탈북화가

권장하는 인용방법

한국어 (번역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서울, 2019).

영어 (원문)

“Mapping the Fate of the Dead: Killings and Burials in North Korea”, Seoul: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2019.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 (한국어) / en.tjwg.org (영어)

이메일 info@tjwg.org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

감사인사

이 프로젝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분들의 조언과 지지, 기술지원에 힘입어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

- 송지영 | 멜버른대학교
- Arthur Gill Green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 익명의 심사위원

보고서 디자인

- 조의환, 오숙이

최근 2년간 격려와 조언해주신 분

- Charles von Denkowski | 보훔루르대학교
- Clifton Emery | 홍콩대학교
- Eike Hein
- Joanna Hosaniak |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 Kay Seok | 오픈소사이어티재단 (OSF)
- Nevenka Tromp | 암스테르담대학교
- Nina Atallah
- Patrick Ball | 인권데이터분석그룹 (HRDAG)
- Youk Chhang | 캄보디아기록보존센터 (DC-CAM)
- 백범석 | 경희대학교
- 유엔인권사무소 - 서울
- 정정화
- 조성재
- 진주현 |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 (DPAA)
- 하유정 | 국제민주연구소 (NDI)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 QGIS와 OSGEO
- PostGIS와PostgreSQL
- OpenStreetMap
- Global Administrative Areas (GADM)

차 례

요약 8

주요결과 10

서론 12

보고서 해석의 제한 16

조사참여자 구성 17

조사와 기록분석 방법 21

북한정권에 의한 살해·사망장소 29

 처형장소 진술 현황 29

 북한의 사형제 3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부재 32

 처형하는 죄목 33

 공개처형 35

 대중의 공개처형 참관 37

 수감 중 사망과 비밀처형 40

시체 처리장소 42

 시체 처리장소 진술 현황 42

 누구의 시체인가? 43

 시체 처리장소 위치 44

정권에 의한 살해와 암매장의 2차적 영향 51

문서증거 보관 장소 56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59

부록 1: 데이터 현황과 표 63

부록 2: 국제인권법 위반사항 66

부록 3: 북한정권에 의한 살해와 대응 개념도 71

지도, 도표, 차트, 그림

지도	1. 도 단위 주요 거주지역 20
	2. 같은 사건/다른 사건 여부 교차비교 27
	3.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현황 (각 도별) 29
	4. 강가의 공개처형장소 (예시) 30
	5. 시체 처리장소에 관한 진술 현황 (각 도별) 42
	6. 전거리교회소 시체소각장 “불망산” 위치에 관한 진술 49
	7. 함경북도 회령시 내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예시) 57
도표	1. 같은 사건/다른 사건 여부 교차비교 26
	2. 시체 소각장소 정보 교차비교 48
	3. 공개처형 진술 현황 64
	4. 수감 중 사망 진술 현황 64
	5. 시체 처리장소 진술 현황 65
데이터 현황	1. 처형장소에 관한 총 진술 63
	2. 시체 처리장소에 관한 총 진술 65
차트	1. 참여자 성별 17
	2. 참여자 연령대 (참여시점 기준) 18
	3. 최종 탈북년도 19
	4. 유해발굴 지지 응답 54
	5. 유해발굴 반대 응답 55
그림	1. 시장 근처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스케치 39
	2. 강가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스케치 40

* 이 보고서에서 북한용어의 한글표기는 『한·영 북한인권용어집』을 참고하였다.¹

1.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국가인권위원회, 2016.

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침해에 관계된 세 가지 부류의 장소를 추적하고 지도로 기록화하는 4년 간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세 부류의 장소는 북한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 시체가 처리된 곳, 이러한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만한 기관들의 위치이다. 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매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최신화하는 한편, 파악하고 기록해온 곳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와 진전된 분석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일삼는 북한정권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과 초법적 처형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정보수집부터 분석까지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적용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탈북민들과 위성사진을 이용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장래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곳들을 파악하고 좌표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이 벌어진 장소들에 관한 위치매핑은 각 진술자의 개별 진술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살해와 암매장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북한정권에 의한 사망에 관해 수집된 정보의 거의 모두는 총살부대를 이용한 공개처형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거의 모든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의 조력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되었다고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몇몇 진술이 있었다. 공개처형 관련 정보가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북한정권이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장소들도 계속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운영시설에서나 국가정책으로 벌어진 사고나 굶주림, 병으로 인한 사망장소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당국이 처형한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체를 묻은 곳도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한 중에도 전통적인 매장 풍습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사망한 가족에 관한 정보는 차단되고 적절한 장례도 치를 수 없어 주민들의 문화규범과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92%는 북한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또는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체 매장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북한에서 벌어져온 인권범죄를 장래에 수사하기 위한 일에는 범죄현장 보존 작업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한 위치들을 주변환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체제 전환 초기에 현장을 확보하고 보존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접근에 필요한 요소와 비용 등 현장수사에서 제한될만한 것들도 미리 짚어볼 수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인권침해 책임추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국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둔 미래의 전환기 정의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결과

- 이 보고서는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기반한다.
- 북한정권에 의한 처형장소에 관해서는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경우 등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323건을 추출하였다.
- 처형 사례에서 북한당국이 적용한 죄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죄였고, 다음으로는 동(구리) 훔친 죄, 인신매매, 소 훔친 죄, 지방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훔친 죄, 비법적 거래 등 그 밖의 경제 관련죄로 이어졌다. 사형이 적용된 죄목들을 통합하여 재분류해보면, 절도 및 재산 침해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폭력죄, 정치 관련죄, 인신매매, 그 밖의 경제 관련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북한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를 실제 피고가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 공개처형 장소에 관해서는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318건을 추출하였다. 이 중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공개처형에 관한 정보는 19건이다.
- 공개처형은 강가, 공터 및 밭, 시장, 언덕 및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벌어진 경향을 보였다.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술이 있었는데, 수 백 명 정도가 가장 빈번했고, 몇몇 진술자는 천 명 이상 규모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 2013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몇몇 진술이 있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허상일 뿐입니다.”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

2019년 4월 15일

- 거의 모든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혐의자를 거의 “반죽음” 상태로 끌고 나왔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혐의와 판결이 낭독되었다.
-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장소에 관해서는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경우 등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진술로 25건을 분류하였다. 이 중 2구 이상의 시체를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한 경우는 7건이다.
- 처형이 아닌 수감 중 사망한 사건진술로 20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민감한 혐의로 비밀처형된 사건진술도 소수 기록하였다.
- 병행 설문 응답자의 83%는 북한에서 살던 중 공개처형을 목격하였고, 53%는 북한당국의 강제로 한 번 이상 공개처형을 보게 됐다고 하였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가장 어린 나이는 7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 응답자의 16%는 북한정권에 살해되거나 처형된 가족이 있다고 하였다.
- 설문 응답자의 27%는 북한정권에 의해 강제실종된 가족 구성원이 있고, 그 중 83%가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 설문 응답자의 92%는 북한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또는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체 매장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정권의 살해와 시체 처리장소들을 밝히는 일이 북한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죽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해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론

북한당국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죽이고 유가족들이 적절한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심각한 영향을 남긴다. 고인을 애도하려면 공개처형 장면을 떠올려야 하고,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가족, 친척,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약식 처형이나 자의적·초법적 처형, 수감시설에서의 심각한 방치, 고문 또는 중노동으로 사망한 많은 이들에게는 단지 정권이 부당한 혐의가 맞고 틀림을 따질 수 있는 정당한 절차만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도 가족에게 돌아갈 권리가 부정된다. 조상들이 후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는 문화권의 하나인 북한에서 죽음으로 귀결된 인권침해는 남은 사람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상처를 준다.

조상들이 후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는 문화권의 하나인 북한에서 죽음으로 귀결된 인권침해는 남은 사람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상처를 준다.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 인권침해에 관계된 세 가지 부류의 장소를 추적하고 지도로 기록화하는 4년 간의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4년 동안 610명의 탈북민들이 참여하였다. 세 부류의 장소는 1) 북한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 2) 시체가 처리된 곳, 3) 이러한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만한 곳들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진술자와의 인터뷰와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결합하여 장래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곳들을 파악하고 좌표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3-4년차(2017-2019년)부터는 수감시설에서의 고문, 굶주림, 질병이나 그 밖의 국가적 정책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장소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매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17년 첫 보고서²를 최신화하는 한편, 파악하고 기록해온 곳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와 진전된 분석을 제시한다.

기록한 데이터는 장래에 다양한 기관들에서 여러 목표로 쓰일 수 있다. 정권피해자로 사망한 경우 시체가 묻힌 위치를 찾고, 진상규명을 도우며, 유가족들과 사회에 구 정권 하에서 누가 죽임 당했거나 강제실종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도 쓰일 수 있다. 장래에 북한이든 한반도 차원이든 새 정부가 세워지고 전환기 정의 수립의 한 과정으로 국제형법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수사할 때, 시체 처리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는 북한지역 사회가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³ 유해 탐지와 발굴은 종종 “진실을 알 권리”의 핵심요소가 된다.⁴ 강제실종 문제 해결은 국가의 법적 책무이기도 하다.⁵

사망·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일의 중요성은 형사사법절차와 공식기록화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독재를 겪은 후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듯이 유해발굴은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개입 방법이다.⁶ 아프가니스탄, 구 유고슬라비아, 과테말라 등에서처럼 진행된 양상은 다양하지만, 인권침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고통으로부터 사회를 회복하는 데에 유해발굴이 중심적 역할을 함을 강하게 예증한다. 북한에서는 유해매장 추정지가 장래에 경제개발이나 사회기반시

유해발굴은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개입 방법이다.

2. 2017년 첫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위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서울: 2017), <https://en.tjwg.org/wp-content/uploads/2019/05/Mapping-Crimes-Against-Humanity-in-North-Korea-KR-TJWG.pdf>.

3. 국제인도법은 분쟁이나 폭력적 상황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유해를 거두어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고, 매장지를 파악하며, 피해자들과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Pierre Guyomarc'h and Derek Congram, “Mass Fatalities, Mass Graves, and the Forensic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rimes,” *Forensic Anthropology: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ed. N.R. Langley and MT A. Tersigni-Tarrant, 2nd Ed (Boca Raton: CRC Press, 2017), 335-45쪽.

4. 앞의 논문.

5. 앞의 논문.

6. Godofredo Pereira, “EX-HUMUS: Collective Politics from Below,” *Dispatches Journal*, no. 1 (2019년 2월 15일), <http://dispatchesjournal.org/articles/ex-humus/>.

7. 유엔은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을 추궁하고, 정의를 세우며, 화해를 이루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 UN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UN Doc. S/2004/616 (2004), iii, 문단8.

설 건설 검토지가 될 경우, 유해발굴부터 우선되어야 할 수 있다. 진실, 정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비사법적 활동들은 전환기 정의 절차의 주요 요소가 된다.⁷

위치좌표와 함께 인권참상이 벌어진 곳들을 매핑하는 작업은 기존 기록들을 보완하여 북한에서 수십 년 넘게 벌어져온 인권침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특히 도움될 수 있다. 비록 인권단체들이 모은 증언과 매핑데이터가 형사사법적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지라도 필요한 기관이 증거 탐색에 나서는 데에 유용한 단서들을 제공해준다. 위치매핑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서술식 증언들을 뒷받침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 위치좌표들은 목표를 특정한 수사를 현재와 미래에 가시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은 획득한 정보와 각 위치들간의 공간적 관련성을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을 쉽게 한다. GIS는 각 위치에 기록한 날짜 정보, 처형 죄목, 정보출처 등 세부 정보항목을 선택하여 모니터나 스크린에 띄우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특정기관이나 시설과의 근접성 같은 공간적 정보와 연계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적절히 코딩하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더 광범위해진다.
-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이 벌어진 장소들에 관한 위치매핑은 각 정보제공자의 개별 진술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살해와 암매장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해당장소의 경사도, 주위의 다른 장소들과의 관련성, 도로나 다른 건축물과의 인접성, 주변 자연경관의 특징 같은 데이터는 모두 “공간적 사고”에 필요한 요소들이고, 수사관들이 정권에 의한 사망과 시체 처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행동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잠재적 유해매장지를 찾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에도 유용하다.⁸

8. Derek Congram, Michael Kenyhercz, and Arthur Gill Green, “Grave Mapping in Support of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Conflict Context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vol.278 (2017년 9월), 260쪽, <https://doi.org/10.1016/j.forsciint.2017.07.021>. 이 분야의 선구적인 사례들은 Eyal Weizman, *Forensic Architecture: Violence at the Threshold of Detectability* (Boston: MIT Press, 2019) 참고.

- 북한에서 벌어져온 인권범죄를 장래에 수사하기 위한 일에는 **범죄현장 보존**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한 위치들을 주변환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체제전환 초기에 현장을 확보하고 보존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접근에 필요한 요소와 비용 등 현장에서 제한될만한 것들도 미리 짚어볼 수 있다.⁹
- 사건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도 위치매핑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다루어본 매핑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인권문제 분석에 **유용할만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경험 많은 분석전문가가 고해상도 위성사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더 나은 협업을 할 수 있거나 특정사건에 대한 해석을 성급히 내리는 것을 줄일 수 있다.¹⁰
- 정책 애드보커시와 대중인식 증진 측면에서도 위치매핑은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현장사진이나 영상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제공자들의 증언에 가시적 요소를 더해줄 수 있다**. 시각화된 정보를 선호하는 오늘날의 미디어환경에서 대중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자들의 진술을 더 널리 노출하고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¹¹

매핑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에 의한 침해로부터 제기되는 필요조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인식도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 내 상황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강제 실종되거나 죽임 당한 경위를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였다.¹²

9. Susan R. Wolfenbarger, "Remote Sensing as a Tool for Human Rights Fact-Finding,"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Fact Fin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466쪽.

10. 위성사진 분석방법을 활용한 좋은 예는 북한인권위원회(NKHR)이다. <https://www.hrnk.org/publications/hrnk-publications.php>.

11. "Visualising Information for Advocacy" (The Netherlands: Tactical Technology Collective, 2014), https://visualisingadvocacy.org/sites/drawingbynumbers.ttc.io/files/VIFA_singlepage_small.pdf.

12. 전환기정의위킹그룹,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서울, 2019), https://www.tjwg.org/multimedia/report_list.php.

보고서 해석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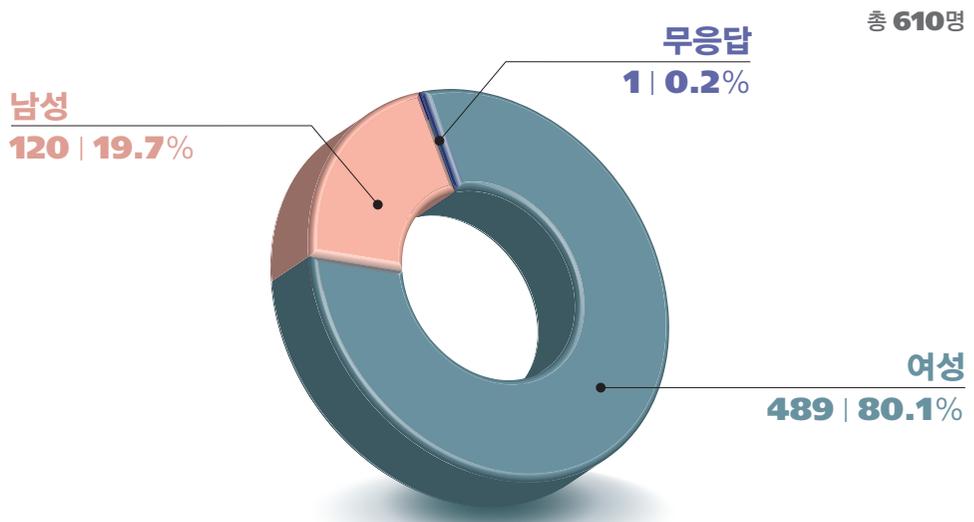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확정적 결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직접 현장을 확인조사할 수 없으며, 다른 추가 정보제공자들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조직, 국제조직들이 인권 침해 사건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¹³ 이 매핑 프로젝트의 초점인 위치 기반 조사와 기록활동은 현존하는 다른 북한인권조사기록들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출발하였고, 정보제공자들이 지목한 장소나 시설 및 기관의 위치와 더불어 사건정보와 입증에 유용할 문서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매핑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점이다. 우리는 특정장소와 그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향후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 민사, 행정, 입법조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 정치적 전환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거나 장래에 어떤 전환기 정의 절차가 실행될 것이라고 예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북한인권침해 책임추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뒷받침하고,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둔 미래의 전환기 정의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13. 이러한 기관들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시민사회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엔 차원에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국 국제연구기관으로는 통일연구원(KINU) 등이 있다. 이 중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발효에 따라 설립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에 따라 탈북민 면담인터뷰 기록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되었고 아직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조재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2년 넘도록 보고서 한편도 안 낸 것은 직무유기”, 문화일보, 2019년 4월 2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601071327328001>.

조사참여자 구성

이 조사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참여하고 있다.¹⁴ 다른 연구들에서도 연구방법론상 탈북민 인구에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듯이 이 조사 참여자들도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와 기록분석 방법 참고).¹⁵

차트 1 참여자 성별



14. 이 보고서에서는 당사자들의 변화하는 선호도를 반영하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 “탈북난민” 등으로도 흔히 불리지만, 합의된 단일한 용어는 없다.

15. 탈북민 대상 또는 진술에 기반한 연구를 할 때, 방법론상 난제에 주목한 최신연구는 Jay Song and Steven Denney, “Studying North Korea through North Korean migrants: lessons from the field”, *Critical Asian Studies*, (2019), <https://doi.org/10.1080/14672715.2019.1611462> 참고.

차트 2 참여자 연령대 (참여시점 기준)

총 6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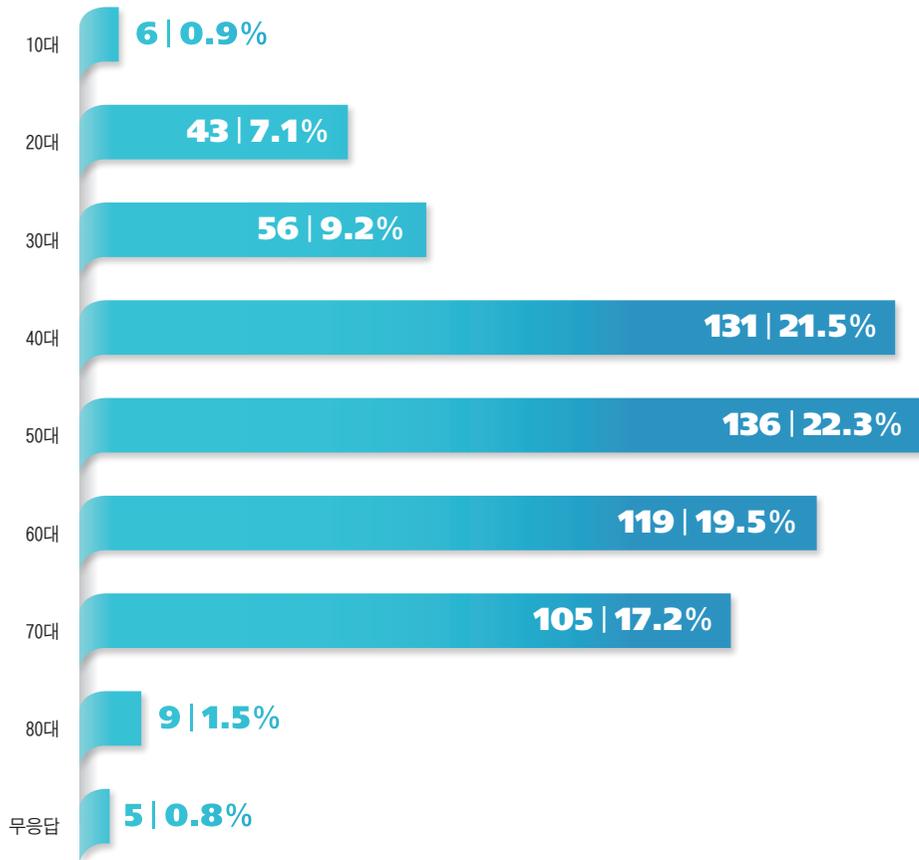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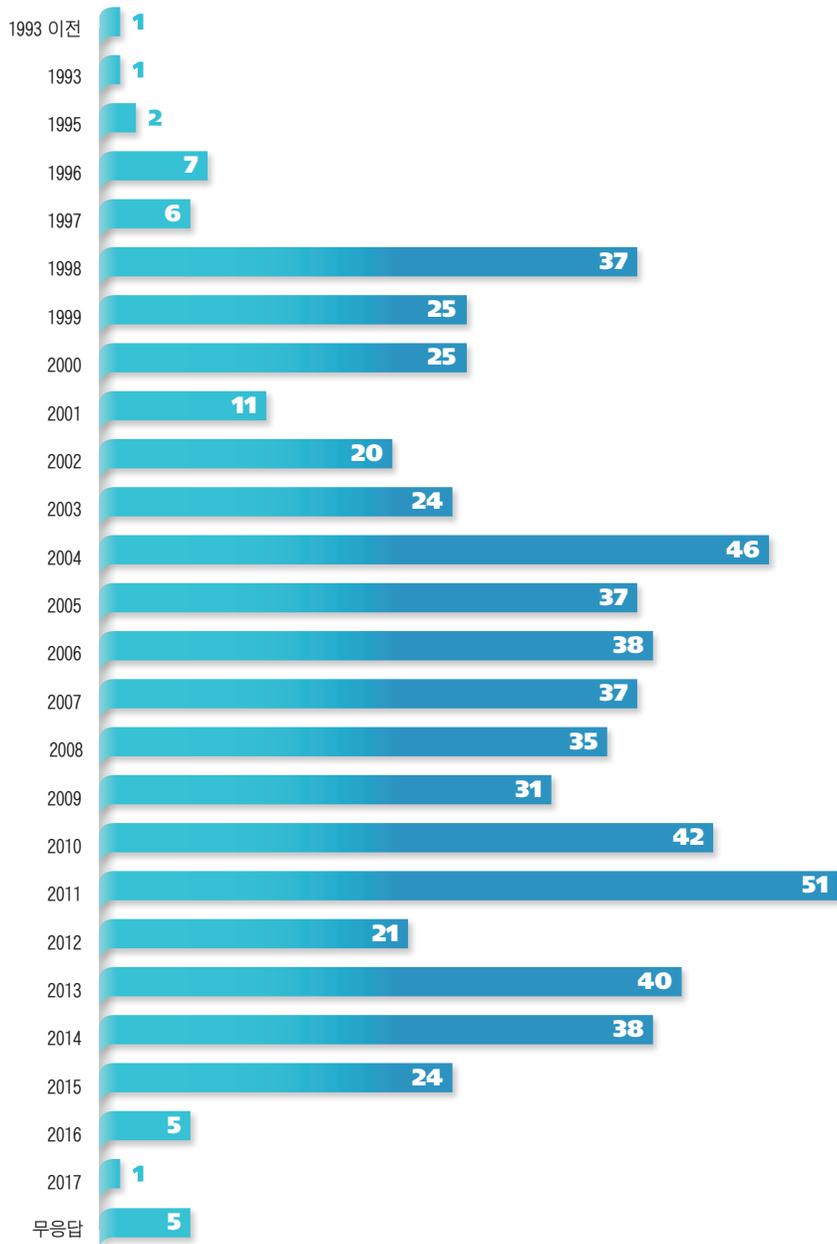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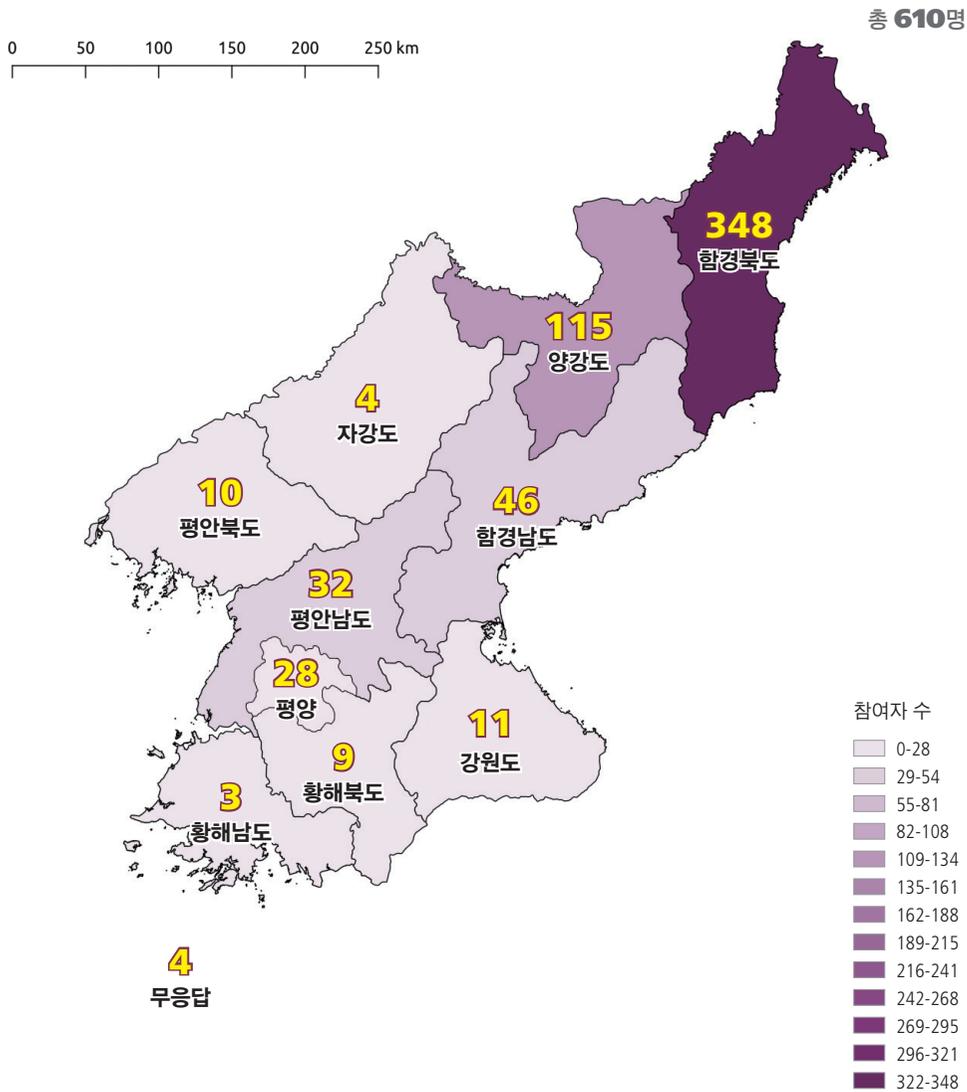
차트 3 최종 탈북년도¹⁶

총 610명



16. 2019년 3월 기준, 탈북민 한국 입국 현황은 총 32,705명이고, 28%가 남성, 72%가 여성이다. 이 현황은 기준 시점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누계 수치인데, 이들 중 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거나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는 이보다 적다. 몇몇 탈북민들은 정착했다가 북한으로 납치되거나 돌아가기도 하였다. 통일부, “북한이 탈주민정책”, 2019년 4월 17일 확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지도 1 도 단위 주요 거주지역¹⁷



17. 남포시는 평안남도에 포함하고, 개성시는 황해북도에 포함하였다. 각 도의 경계표시는 기본적으로 Global Administrative Areas (<http://www.gadm.org/>)의 GADM 2.8 데이터로 생성하였지만, 이 매핑 프로젝트에 부합하도록 가장 포괄적 단위의 최상급 행정구역을 10개(9개 도와 평양특별시)로 정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10개 행정구역 명칭의 영어 철자는 북한 조선중앙통계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조사 보고서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 Korea, 2009,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wphc/North_Korea/Final%20national%20census%20report.pdf). 지리 좌표계의 경우, 2017년 첫 보고서에서는 구글어스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인 WGS 84(EPSG:4326)를 썼지만, 이번 경과보고서에서는 북한 전체와 각 지방의 실제 경계를 더 잘 반영하여 정확한 거리측정에 유리한 WGS 84/UTM Zone 52N(EPSG:32652)을 이용하였다.

조사와 기록분석 방법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로 정보를 모으는 기관들은 가용자원과 제도적 여건의 제한에 더해 탈북민 인구에서 적절한 표본을 확보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¹⁸ 때문에 이 조사는 한국 내 탈북민 중 앞선 참여자들이 다음 참여자들을 추천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⁹ 따라서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는 북한 전체인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바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한 누구에게도 특정사건이나 위치 또는 시기로 한정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난 시기나 날짜가 언제이든 북한에서 그 위치가 어디이든 상관 없이, 우리가 찾은 세 가지 부류의 장소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였다.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지목한 위치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 목표를 심화한 조사인터뷰 방향을 이후에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이용하는데, 마을이나 도시

18. 비슷한 어려움은 관련 조사기관들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으로도 비슷하며, GIS 기술을 활용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례보고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사무총장 보고”(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2019년 3월 7일), 문단19-29,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0/Documents/A_HRC_40_36.docx (영어), https://seoul.ohchr.org/EN/Documents/2019/A_HRC_40_360_Accountability_KOR.PDF (한글). Wolfenbarger, 2016, 463-477쪽. “Broadly Accepted Practices Regarding the Use of Geospatial Technologies for Human Rights,” *AAAS Geospatial Technologies Project*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6년 10월 24일), https://www.aaas.org/sites/default/files/s3fs-public/Broadly%2520Accepted%2520Practices_GTP_HRDT.pdf.

19.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북한주민 전체의 경험을 대표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이 조사의 참여자들은 이미 여성이 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내 탈북민 분포(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2019)보다 8% 더 높은 여성비율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장출근 의무가 덜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들키지 않고 탈북하기 쉽기 때문이다.

명, 기차역 이름과 같이 위치를 탐색하는 출발지점을 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정보만 제공한다.²⁰ 살았거나 매우 친숙한 지역에서 시작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연구원은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부류의 장소와 사건 유형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한다. 진행자는 참여자에게 설명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위성사진에서 지목할 수 있는지 묻고, 진행자의 유도 없이 위치를 찾는다. 위치를 지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 관한 구체적 묘사를 장래의 다른 인터뷰나 분석을 위해 기록하고 보존하지만, 해당 사건 정보에는 위치좌표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찾는 장소들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수집되었는지 이 보고서에서 수치로 제시하는 데에는 2017년 첫 보고서에서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장소에 관한 정보 현황은 정보출처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빙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 인터뷰 기록들에서 추출하였다. 정보제공자가 직접 목격했다는 정보인 경우,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정보인 경우, 인터뷰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임을 밝히고 인터뷰 진행자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인터뷰 기록의 대부분은 이 부류에 속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신빙성이 낮은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전해 들은 말이나 소문에 기초하거나 추측성 진술인 경우이다. 둘째, 조사 초점이 위치매핑이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위치를 지목하여 좌표가 확보된 경우를 주요한 정보 현황으로 포함한다. 위치좌표가 없는 정보는 참여자가 위성사진에서 특정위치를 지목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몇몇 일화나 설명이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장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치좌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건 정보를 이 보고서에 담았다.²¹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 제시하듯이 지금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한 장소 정보나 위치좌표가 확보되지 않은 정보도 유사성이 높아

20. 이 기초정보는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이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한 북한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쓰는 버전은 제18판이다. North Korea Uncovered, Version 18, 2009년 6월 25일, <http://www.nkeconwatch.com/north-korea-uncovered-google-earth/>. 그 밖에도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https://www.openstreetmap.org/#map=14/41.4089/128.1953>), 38노스의 DPRK Digital Atlas (<http://38northdigitalatlas.org>),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을 간헐적으로 참고한다.

21.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해온 한국의 통일연구원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그런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 등을 구분하고 있다.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7』(서울: 통일연구원, 2017), 34쪽.

서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다른 정보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조사기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수년 전 조사 초기단계에서의 기록들 중에 정보출처의 유형에 관해 이후에 보강한 새 기준으로는 아직 코딩하지 못한 일부가 있다. 따라서 초기데이터의 재분류를 계속함으로써 몇몇 기록들의 신빙성 평가는 상향될 전망이다. 2017년 첫 보고서에서는 신빙성 수준 구분에 구애되지 않고 당시까지 확보한 모든 인터뷰 기록을 유형별 장소 현황으로 제시하였다 (유형별 장소 정보 현황을 단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부록1 데이터 현황표 참고).

지금까지의 참여자 대부분인 76%가 함경도와 량강도 등 북한 북부지방 출신인 결과, 기록한 데이터의 지역적 분포도 이 지역들에 많다.²²

이 보고서에 담은 장소에 관한 현황들은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의 개수이고, 현 단계에서는 유사성 있는 정보를 중복되었을 수 있는 장소 개수로 간주하여 빼는 중복 제거(de-duplication) 작업까지 거친 수치는 아니다. 동일사건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 위치좌표마다 장소정보와 관련사건정보 데이터 모두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참여자 대부분이 북부지방 출신인 결과, 데이터의 지역적 분포도 이 지역들에 많다.

우리가 기록한 많은 장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 공개처형에 쓰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처형에 관한 참여자들의 기억은 오래되거나 다른 사건들과 섞일 수도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나 장소인지 가늠하여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진술정보를 다른 진술정보들과 비교할 때에 부분적 정보 부족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북한 내 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나 장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여러 참여자들이 따로

22. 비교해보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에서는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약 82%가 함경북도와 량강도를 최종 거주지로 밝혔다. 앞의 보고서, 32쪽.

진술한 기록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듯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도를 통합하여 특정위치들을 들여다보면 정보제공자들이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목하였을 때에 가졌던 의문점이 풀리거나 더 조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더 뚜렷한 목표를 도출하여 자체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들의 정보공유 또는 장래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할 때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도표 1은 한 지역에서 벌어진 공개처형들에 관해 8명의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정보들 중 특기할만한 사항들을 예시하는데, 각 정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중복되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을지 보여준다. 흰색 칸들은 각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들 사이에서 대부분 겹치는 측면을, 연한 파란색 칸들은 다른 정보 대부분과는 다른 측면을, 진한 파란색 칸들은 아무 정보가 없음을 나타낸다. 도표에 이어지는 지도들은 각 정보들마다 제공된 위치좌표들이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각각의 점은 진술자들이 제공한 공개처형 정보를 하나씩 대표하고 각각 지목한 위치를 나타낸다.²³ 지도마다 상단에는 어느 참여자가 지목한 것인지 밝히고 있고, 위치는 붉은색 점으로 표시하였다. 도표에서 진술자3이 제공한 정보는 목격자로부터 들은 공개처형 사건이고 위치를 지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어지는 비교분석용 지도들에서 제외하였다.

사건정보와 지도상의 위치좌표들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어떤 정보들이 같은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인지 잠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는 4명의 진술자가 제공한 정보들은 같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비교지도에서는 같은 사건정보로 보이는 위치좌표들을 초록색 점으로 표시하였고, 이는 장래에 현장수사할만한 정보임을 뜻한다. 이 중 참여자 한 명은 위치좌표를 지목하지 못하였으나, 3명이 제시한 정보는 내용의 유사성 상 같은 사건으로 보이고, 각자 위치로 지목한 3개의 초록색 점은 서로 600미터 거리 내에 있다. 현장에 가서 지상에서 지목하였다면 상당한 거리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위치지목은 상공에서 촬영한 위성지도를 이용하였고 정밀한 위치판단

23. 북한당국의 현장인물이나 훼손 시도 우려가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 위치의 실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 소개하듯이 북한정권은 많은 묘지나 봉분이 보기 안 좋다고 정리한 전례들이 있다.

에 도움될만한 주변건물이 없는 공터 가운데에 지목한 위치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이 비교에서 진술자 5가 제공한 정보도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인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참여자가 지목한 위치를 위성지도로 확인해보니 잘못 지목하기 어려운 건물들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를 지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진술자들이 지목한 3개의 초록색 점들 중 하나로부터 550미터 거리였다. 또한 다른 진술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내용에서도 다른 측면들이 있었으므로 같은 사건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비교지도에는 위치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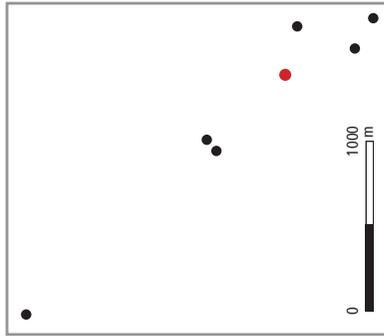
북한 각지에서 다양한 규모와 죄목으로 벌어져온 공개처형 관련 정보수집과 기록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의 설명은 기록한 사건정보들 중 특정장소에 관해 겹치는 정보를 파악하고 묶는 방법 중 하나를 예시한 것이다.

도표 1 같은 사건/다른 사건 여부 교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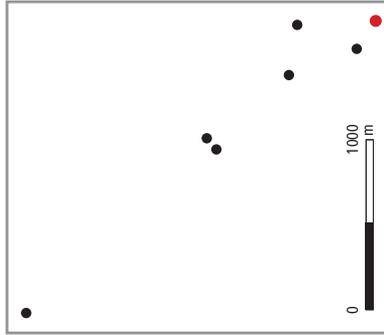
수집정보	같은 도시								다른 정보	
	진술자 1	진술자 2	진술자 3	진술자 4	진술자 5	진술자 6	진술자 7	진술자 8	유사한 정보	정보 없음
위치	같은 도시									
장소유형	A 유형 장소 인근	A 유형 장소 인근	A 유형 장소 인근	A 유형 장소 인근	B 유형 장소 인근	C 유형 장소 인근	A 유형 장소 인근	B 유형 장소 인근		
지목한 위치 (좌표)	○	○	X	○	○	○	○	○		
기억하는 처형시기	2013년 여름 7월, 오후 2시경	2014년 6월, 정오 12시경	2013년 여름	2013년 여름	2013년 여름 7월이나 8월	2013년 6월	2014년 6월	2014년 봄		
처형된 사람	40대 남성 2명 (사건의 주동자)	남성 2명 (사건의 주동자)	남성 2명, 여성 1명	남성 2명 (사건의 주동자)	40대 남성 1명 (사건의 주동자)	남성 5명	남성과 여성 총 6명	남성 1명		
부과된 죄목	남한 영상물 시청, 성매매 알선	남한 영상물 시청, 성매매 알선	남한 영상물 시청, 성매매 알선	음란영상 시청, 성매매 알선	남한 영상물 시청, 성매매 알선	여성들과 남한 영상물 시청	비법 월경, 중국으로 인신매매	매매 강제결혼 중개		
함께 공개재판 받은 사람	성매매 혐의 여성 15명	성매매 혐의 여성 18명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성매매 혐의 여성 8명	정보 없음	비법 월경 혐의 여성 10명	정보 없음		
함께 공개재판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	추가 처벌 없이 석방	처형되지 않았지만 노동교화형 추정	정보 없음	정보 없음	노동교화형	전원 처형	추가 처벌 없이 석방	정보 없음		
처형 방법	판성된 총살부대기 집행									
특정적 기억	풀러난 여성들이 기뻐하며 "간질임 장군님 민세"를 외쳤다. 모인 사람들을 쇠로 된 휴대용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모인 사람들을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모인 사람들을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모인 사람들을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모인 사람들을 쇠로 된 휴대용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모인 사람들을 탐지기로 수색했고,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다가 끌고 갔다.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없음		
정보 출처 유형	직접 목격	직접 목격	직접 목격하진 사람에게 들음	직접 목격	직접 목격	직접 목격	직접 목격	다른 사람에게 들음		
인터뷰 시점의 연령	60대	40대	20대	60대	30대	60대	30대	30대		
최종 탈북시기	2010년대 중반									
조사팀 잠정판단	같은 사건				다른 사건					

지도 2 같은 사건/다른 사건 여부 교차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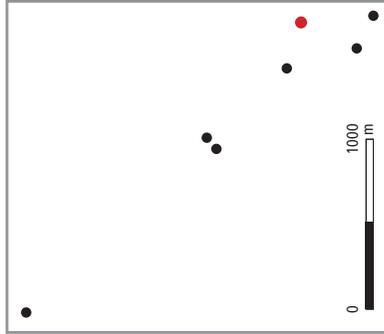
진술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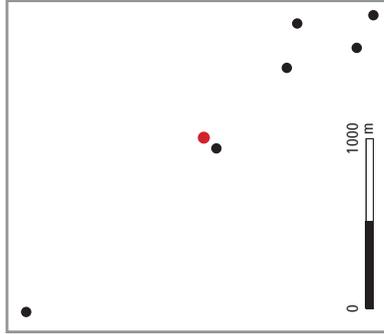
진술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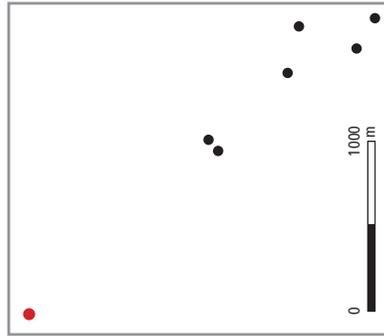
진술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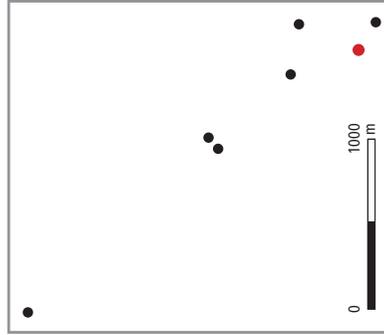
진술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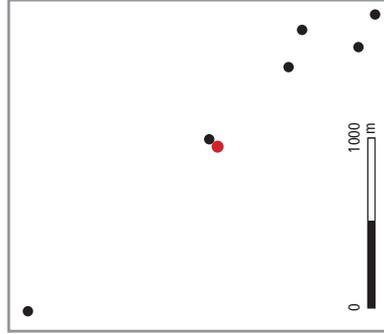
진술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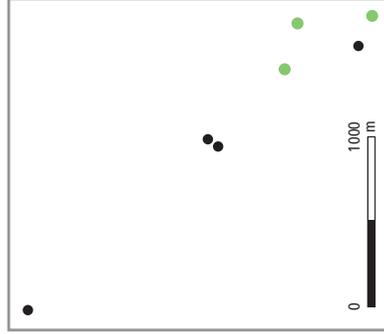
진술자 7



진술자 8



같은 공개처형 사건 가능성(초록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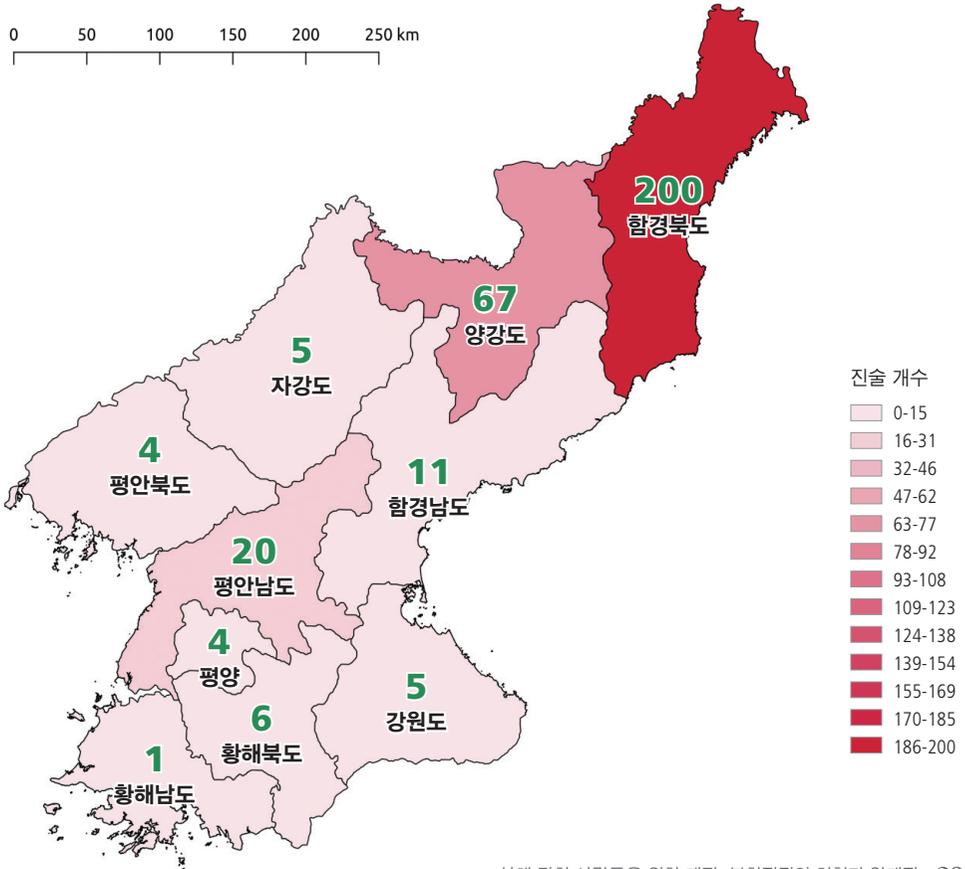
이후의 장들에서는 이 조사의 중점인 세 부류의 장소인 북한정권에 의한 살해 및 사망, 시체 처리, 관련문서가 보관되어 있을만한 위치들에 관해 심층인터뷰로 구축한 지도데이터와 정보데이터를 선별하여 제시한다. 모든 정보는 진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하였다.

북한정권에 의한 살해·사망장소

처형장소 진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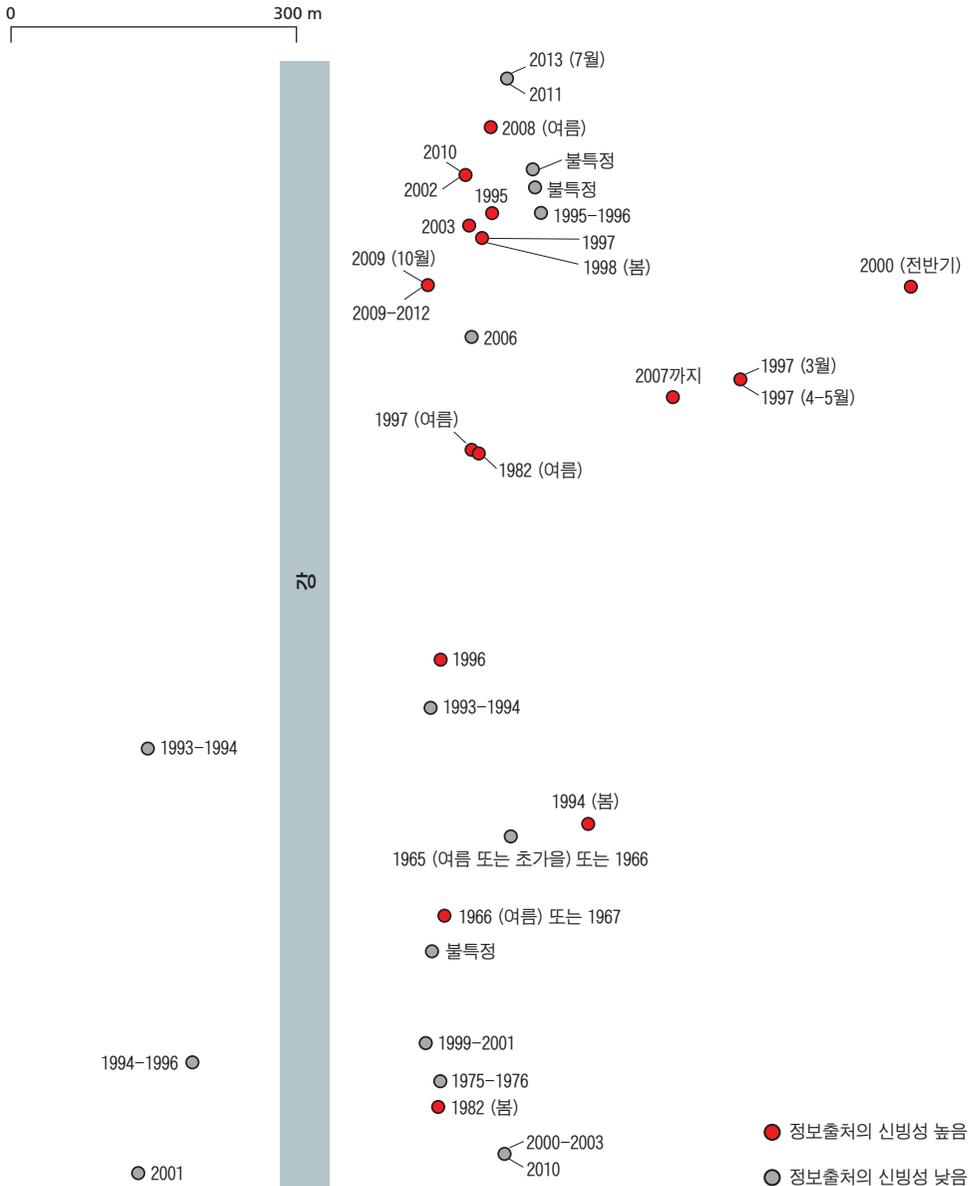
처형장소에 관해서는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진술로 323건을 추출하여 지도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후에는 북한정권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만한 살해와 그 밖의 경위의 사망에 관한 진술들을 사망 유형과 정황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지도 3 처형장소에 관한 진술 현황 (각 도별)



지도 4 강가의 공개처형장소 (예시)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기록되었으나 실제 위성사진과 위치정보는 보호하였다. 이 곳의 강가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 관한 35건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곳에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이 벌어져왔음을 시사한다. 이 중 6건의 진술은 교수형에 관해서였고, 나머지는 총살부대를 이용한 공개처형들이었다.



북한의 사형제

2018년 말,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2019년 5월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 대비하여 북한의 사형제도와 처형 문제에 집중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사형판결과 공개처형 집행시 공정한 재판 절차가 결여되고, 그 행태가 국제인권규범들을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처형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도록 강제하는 것도 중요한 위반으로 포함하였다.²⁴ 사형 적용 통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유엔회원국들의 권고가 거듭되었지만, 북한은 현황을 밝히는 것을 줄곧 거부해왔다. 북한은 “사형판결은 규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집행”하지만,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형집행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²⁵ 2019년 5월 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3차 UPR에서 북한대표단은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사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사를 신중히 고려하여 공개 사형하는 적도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비공개처형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우리의 조사 데이터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여러 가지 혐의에도 사형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상이 특히 무거워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북한이 사형제를 실행함으로써 위반하고 있는 국제규범들이 무엇인지는 부록 2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24.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et al. “The Need to Clarify the Procedure and Government Organs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s of Capital Punishment, the Disposal of Bodies of Executed Persons, and the Notification of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to Their Family Member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Joint Submiss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the 33rd Sess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2018년 10월 4일), https://www.tjwg.org/multimedia/report_list.php.

2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7/10, 2014년 7월 2일, 문단11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HRC/27/10.

2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3/13, 2010년 1월 4일, 문단88,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HRC/13/13; 한태송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 연설문 (발언 및 답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view – 33rd Sess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2019년 5월 9일, <http://webtv.un.org/search/democratic-people%E2%80%99s-republic-of-korea-review-33rd-session-of-universal-periodic-review/6034760474001/?term=&lan=english&page=4> [유엔 녹화영상, 1시간46분53초-1시간47분13초에 발언].

지금까지의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에 사형집행 방식상 비공개처형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공개처형은 대조적으로 매우 많이 기록되어

“총소리를 많이 나게 하라.”
- 김정일

있다. 다른 기관들의 기존 보고와 마찬가지로 공개처형의 빈도는 정권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참여자는 1985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평양에서는 일요일마다 한 두 명씩 총살되었고, 교수형 집행도 종종 벌어졌으며, 주로 시장에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처형된 사람의 가족은 대개 처형현장에 참석해야 했지만, 시신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 번은 안전부(경찰)가 공개처형 후 3-4시간 동안 누구나 보도록 시체를 전시해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반장이었던 진술자는 김정일이 권력승계가 대외적으로 공식화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총소리를 많이 나게 하라”고 전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 시기부터 공개처형이 급증하였고, “배고파서 옥수수 따먹어도 총살하고, 강냉이 훔쳐먹어도 총살했다”는 진술이었다.²⁷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부재

2019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 워킹그룹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²⁸

이 조사의 진술자들은 공개처형을 벌이는 같은 장소에서 약식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

27. 북한전략센터(NKSC) 보고서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대기근의 영향이 여전히 한창일 때,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는 자들을 향해 총소리를 울릴 때가 되었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김동식, “북한 엘리트 처형 및 숙청: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통한 김정은 집단학살사건 조사” (북한전략센터, 2019), 136쪽.

28.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33/PRK/1, 2019년 2월 20일, 문단28, <https://undocs.org/en/A/HRC/WG.6/33/PRK/1>.

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범죄혐의에 관한 통보, 변호사 선임,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전적으로 부인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권해졌다”.²⁹ 이 조사의 진술자들은 재판현장에 공개 처형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형선고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⁰

진술자들은 형식적인 공개재판을 묘사하였는데, 변호사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재판관이 참석하는 것도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안전원(경찰)들만 있거나 가끔은 보위원(국가정보기관원)들이 참석해 혐의를 낭독하고 판결 선고까지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술하였다. 매우 많은 경우에 차량에 실려온 피고는 심각하게 다쳤거나 “반 죽음” 상태로 공개재판 현장에 끌려나왔다고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공개재판 직후 현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기록하였다.

피고는 심각하게 다쳤거나 “반 죽음” 상태로 끌려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처형하는 죄목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도 보고하였듯이 북한정권은 여전히 “국가반역죄”나 “민족반역죄”라고 칭하며 정치적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정치적 범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 범주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가 국가이데올로기 유지 등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³¹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 문단39.

30. 통일연구원(KINU) 보고서는 공개처형 직전에 진행되는 재판이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하였다면 재판 유무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경욱 외,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40쪽.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절차를 수사→예심→기소→제1심 재판→제2심 재판→집행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국가안정보위성(옛 보위부)에서 수행하는 예심은 사실상 취조, 고문, 강제 자백 등 정해진 법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간으로 통한다. 문동희, “전거리 교화소서 보안원 살해한 수감자 공개총살,” 데일리엔케이, 2019년 01월 15일, <https://www.dailynk.com/전거리-교화소서-보안원-살해한-수감자-공개총살/>.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 문단41.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에서 흔한 공개처형 죄목은 동(보통 구리선)이나 가축(특히 소)을 훔친 죄, 인신매매, 살인강간, 비법 장사(주로 중국을 오가는 밀수)였고, 덜 흔한 죄목은 “반국가” 활동과 중국으로의 비법월경죄로 나타났다. 마약 제조, 거래, 투약 혐의로 공개처형된 사례 정보들도 있다. 마약 관련 혐의 외에 중국을 넘나든 밀수 등 다른 혐의들과 병합 처벌되었다는 사례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마약 혐의로만 처형되었다는 사례들이다. 몇몇 인터뷰에서 진술자들은 다른 혐의와 병합된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남한영상을 시정한 죄로 사형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³² 우리의 데이터에서 남한영상을 본 죄로 처형된 경우로 분류한 최근 기록은 2013-2014년의 일이다 (도표 1 참고). 정권에 의한 살해 정보를 통합 분류해보면, 총 715회 언급된 혐의들 중에서 식량과 가축 등을 훔치거나 재산권 침해 혐의가 가장 많은 238회였고, 폭력 혐의 115회, 정치적 범죄 혐의가 73회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북한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를 실제 피고가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같은 혐의는 탈북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도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인육을 먹은 혐의는 이 조사에서 20회나 언급되었는데, 공개처형 이유를 그렇게 기억하는 대부분은 소문으로가 아니라 공개재판과 처형 상황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인육 섭취처럼 특히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벌어질만한 일인지 숙고해보는 주의가 연구자들에게 필요하다.

몇몇 진술자들은 피고인의 북한정권이 부여한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계층 분류상 위치가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성분제도에 따라 모든 북한주민은 핵심, 동요,

하층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경미한 혐이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그에 따라 하층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경미한 혐이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진술자는 안전원과 보위원들이 승진하기 위해 수사성과를 부풀린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 진술자는 위 기관원들이 낮은 성분에 속한 주민들을 고

32. 북한전략센터(NKSC) 보고서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로 자본주의 국가의 매체나 영상물을 본 사람들이 조사받고 처형되었다고 지적한다. 김동식 (2019), 136쪽.

의로 겨냥하고, 뇌물이나 연줄이 없어 풀려나기 힘든 사람들을 골라 인신매매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에게 부과된 죄목은 인신매매였지만 실제 혐의는 비법장사 행위였다고 생각하였다. 두 명이 처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개처형

공개처형에 관해서는 318건의 정보를 신빙성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분류하였다. 이 중 294건의 정보는 편성된 총살부대를 이용한 처형, 25건은 모두 2005년 이전에 벌어진 교수형, 1건은 유독성 화학물질로 처형했다는 정보였다.³³ 318건의 정보 중 19건은 한 번에 10명 이상 집단처형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한 번에 10명 미만 처형에 관한 정보는 299건이었다 (부록 1, 도표 3 참고).³⁴

공개처형에 관해서는 318건의 정보를 신빙성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분류하였다.

첫 2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개처형이 가장 많이 벌어진 장소는 강가, 공터 및 밭, 시장, 언덕 및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이었다.³⁵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술이 있었는데, 수 백 명 정도가 가장 빈번했고, 몇몇 진술자는 천 명 이상 규모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병행한 설문 응답자의 83%가 북한에서 살던 중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⁶ 대부분 5회 미만으로 공개처형을 보았고, 가장 많이 본 횟수는 10회로 나타났다

83%가 북한에서 살던 중 공개처형을 목격했고, 53%가 북한당국의 강제로 한 번 이상 공개처형을 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3. 공개처형에서 교수형과 총살부대를 이용한 총살형이 함께 벌어진 경우였고, 따라서 처형방식으로는 별건으로 분류하였다.

34. 앞의 각주 참고.

35.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부터 적게 언급된 장소 순이다. 한국어에서 산은 영어에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여서 산으로 이어지는 언덕이나 비탈 같은 낮은 곳을 지칭할 때도 흔히 쓰인다.

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가장 어린 나이는 7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는 60대 후반 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가 북한당국의 강제로 한 번 이상 공개처형을 보게 되었고 고 응답하였다.

많은 진술자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반 죽음” 상태로 끌려나왔을뿐만 아니라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종종 눈가리개를 씌우기도 했

총살에서는 3명의 사격수가 3발씩 3회, 총 9발을 사격한다.

다고 설명하였다. 가장 흔한 공개처형 집행 방법으로 편성된 총살부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래로 공개교수형은 중단되었거나 주목할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의 압력이 교수형 집행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관측들이 있다.³⁷ 총살 방식으로는 3명의 사격수가 3발씩 3회, 총 9발의 총알을 사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³⁸ 북한전략센터(NKSC)는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후 평양에서 고위층 간부들에 대한 처형방법은 특히 잔인한데, 처형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바, 북한사회에 극도의 공포심과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았다.³⁹ 처형은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서도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시설이나 장비 훼손, 북한정권 비판, 탈출 또는 절도 시도 혐의로 처형될 수 있다고 한다.⁴⁰

공개처형에 관한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안전부(경찰)가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진

공개처형 집행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

36. 이 매핑 프로젝트의 4년차인 2018-2019년에 편의표집 방식으로 인터뷰한 84명의 설문응답 결과이다. 이러한 설문 문항들은 이 프로젝트 5년차인 2019-2020년과 그 후로도 계속 포함될 것이다.

37.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Effective.” Daily NK. 2005년 1월 26일.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catald=nk02100&num=13>.

38.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북한에서 공개처형 방식은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총살을 가장 많은 경우로 꼽았다. 임순희 외, 『2018 북한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8), 113-116쪽. 북한전략센터(NKSC) 보고서는 AK자동소총으로 9발 사격하는 것을 일반적인 총살 방식으로 꼽았다. 김동식 (2019), 125쪽.

39. 앞의 보고서, 136-137쪽.

40. 윤여상·이자은·한선영,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1), 482-496쪽. 통일연구원(KINU)은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에 5개의 관리소(정치범수용소)들이 가동 중이고, 8만-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탈북민 심층면접 기록과 위성사진 분석에 근거하였다.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9-21쪽. <https://www.unikorea.go.kr/nkhr/data/research/?mode=view&cntId=53146>.

술자들은 공개처형 집행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한 진술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니까”라고 설명하였다. 처형 집행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몇몇 사례들에 관한 정보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공개처형 참관

한 진술자는 1960년대에 공개처형을 참관했는데, 무료로 먹을거리를 나눠주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는 등 “축제현장” 같았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그러했던 분위기는 더 이상 없고, 공개처형은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을 주입하여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도록 억제하는 핵심수단이 되었다. 지방 단위에서 공개처형이 벌어지면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처형 집행을 예고한다. 다양한 수감시설들에서는 여타의 행동 억제 수단으로 수감자들을 모아 처형장면을 보게 한다. 2000년대 초반 로동단련대에 있었던 한 진술자는 탈북을 중개한 3명의 여성에 대한 처형을 80여명의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보게 한 일을 묘사하였다. 단련대 내의 모든 수감자는 중국으로 월경하려다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강제복송된 경우였다고 한다. 안전원은 참관시킨 80여명의 수감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00년대 말 군부대에서 벌어진 처형에서는 참관시킨 군인들에게 총살한 시신을 줄지어 밟고 지나가게 강제하고, “경고 하기 위해” 불과 몇 센티미터 가까이 총 맞은 자리를 들여다보게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조사에 병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핑조사 참여자들은 마을과 시 단위에 열린 공개처형을 항상 강제로 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참여자들에 따르면 공개처형된 사람의 가족들은 아동인 자녀들까지 강제로 처형을 보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약 사용 혐의로 한 남자가 처형된 사례에서는 보위원들이 그의 아내를 데려와 총살 집행을 앞둔 남편에게 “넌 나쁜 자식이야! 당을 배반하고 왜 그렇게 했어?”라고 공개 비난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공개처형을 참관하는 주민들을 감시하려고 한 사례 정보도 여러 건 있다. 몇몇 진술자들은 사복을 입은 보안원들이 참관군중 사이에 잠복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2명의 진술자는 2013년과 2014년에 공개처형 장소로 입장하

공개처형 장소로 입장하기 전에 공항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사람들 몸을 수색하였다. 휴대전화기는 모두 임시 압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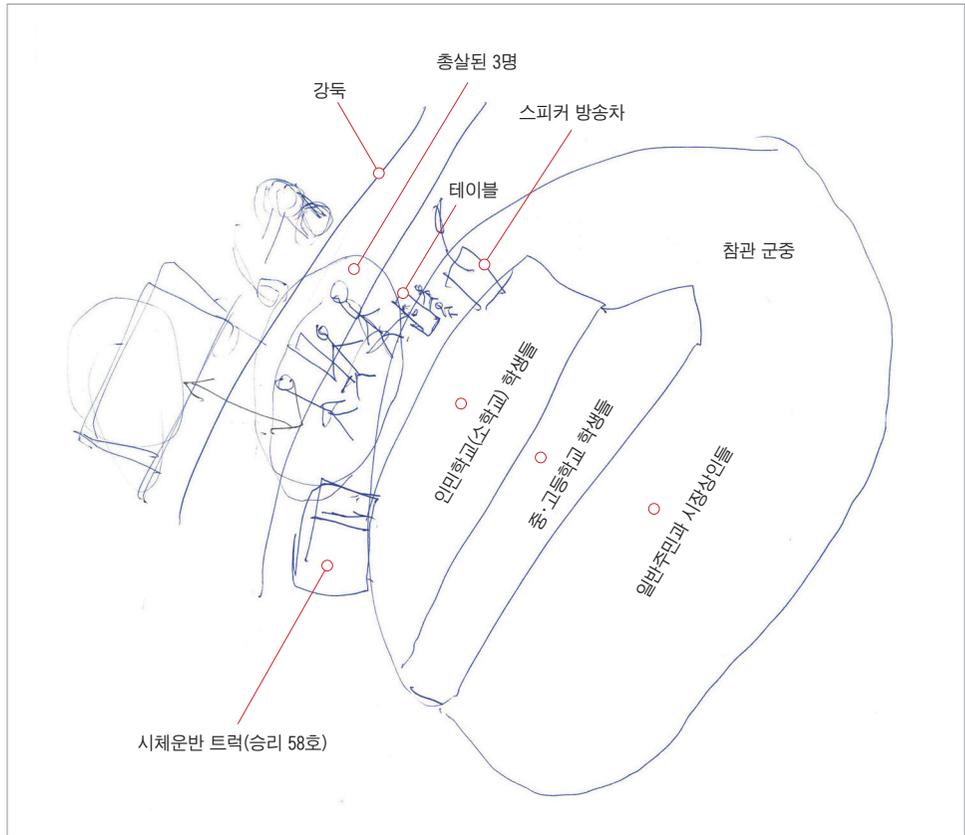
기 전에 공항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참관하는 사람들 몸을 수색하였고, 휴대전화기처럼 금속이 포함된 물건을 탐지했다고 진술하였다 (도표 1). 휴대전화기, 열쇠, 칼 등 금속이 있는 온갖 물건을 소유자가 누구인지 표시한 이름표를 붙여 별도의 보관함에 임시 압수되었고, 처형집행 후 각자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2명의 진술자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늘면서 공개처형 장면이 촬영되거나 녹음되어 북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북한정권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⁴¹

그림 1과 그림 2는 이 조사 진술자들 중 서로 다른 연대에 여러 차례 처형을 목격한 2명이 공개처형장을 묘사한 스케치들이다.

그림 1은 1990년대 말, 시장과 강변 공터에서 집행된 3명에 대한 공개처형을 묘사한 스케치이다. 진술자는 총살 방식 공개처형의 전형적인 장면을 그렸다. 진술자는 말뚝에는 처형을 앞둔 3명이 묶여 있었고, 처형집행 전 테이블을 놓고 안전원 3명이 앉아 있던 장면을 그려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일반적인 공무차량이 스피커 방송차로 쓰였고, 총살 후 당국에서 시체 이동차량으로 쓴 승리58호 화물트럭을 그렸다. 참관한 군중은 연령대로 구분되는 순서가 있었는데, 맨 앞에는 인민학교(한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가운데에는 중고등학교 아동들을, 맨 뒤쪽으로는 성인인 일반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4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2018년 보고서에 비슷한 사례의 탈북민 증언을 기술하였다. 2011년에 청진시에서의 한 공개처형이 기존의 개천 주변이 아닌 스포츠경기장으로 옮겨져 집행되었고, 경기장은 하나의 출입구만 있어서 처형을 참관한 사람들 모두 휴대전화기를 압수되었다가 끝나고 돌려받았다는 진술이다. “총살 장소는 수성천 다리 밑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혹시 찍어서 외부에 보내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함경북도 체육 경기장이라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는 들어가면 밀폐가 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들이 손 전화 있는지 다 확인해서 회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도 찾아나가게끔 했어요. 그 때 사람이 한 천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임순희 외 (2018),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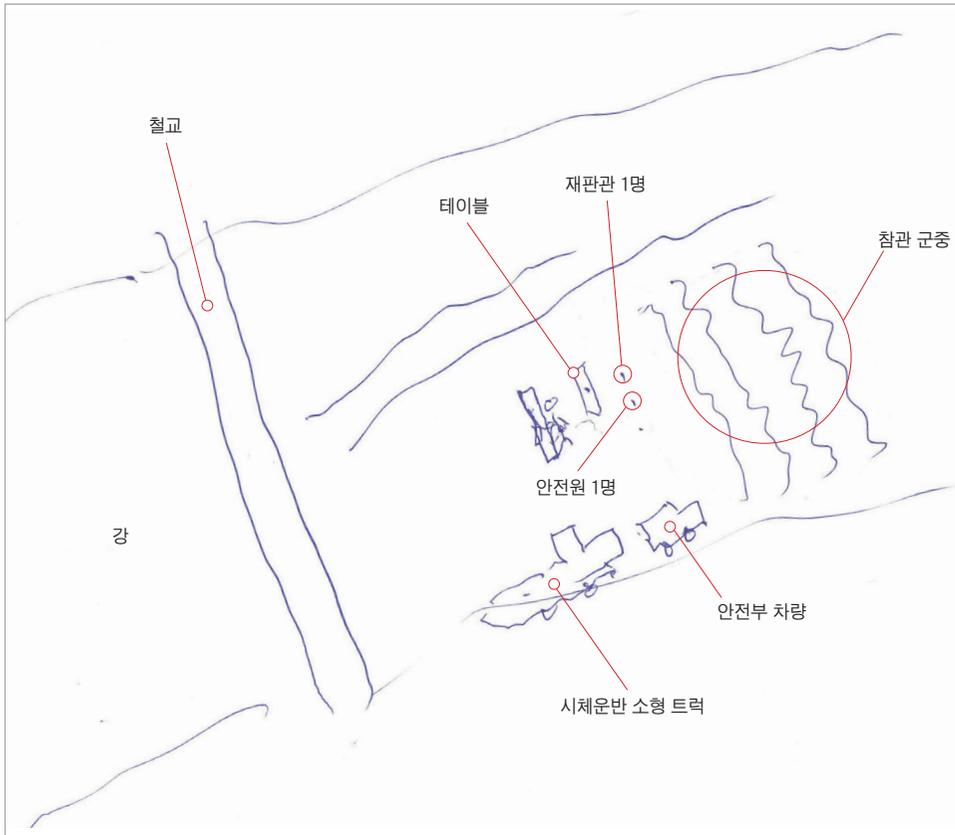
그림 1 시장 근처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스케치



앞히거나 세웠음을 보여준다. 총살 집행부대는 6명이었고, 안전부 신입대원들로 보였으며, 처형된 사람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겨냥해 사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2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5년 동안 강변에서 총 6 차례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을 그린 스케치이다. 진술자는 자신이 본 공개처형의 전형적인 장면을 그렸고, 모두 살인혐의를 받은 탄광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운데 놓인 테이블에는 안전원 1명과 재판소에서 나온 1명이 앉아 짧은 공개재판을 진행했다고 묘사하였다. 테이블 뒤로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400명 가량의 군중이 서서 참관했다고 한다. 진술자는 대개 2대의 차량이 현장에 있었고, 일반적인 공무차량 1대와 시체를 실어가는 작은 트럭 1대였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공개처형은 주로 여름철에, 점심식사 시간

그림 2 강가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스케치



에 진행됐다고 한다. 총살집행부대는 안전부 신입대원으로 보이는 3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스케치는 진술자가 위성사진을 보기 전에 그린 것인데, 이후에 위성사진에서 지목한 위치와 스케치를 비교해보면 철교와 강 배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위성사진으로는 인근에 탄광이 보이는데, 진술자가 먼저 한 설명처럼 처형된 탄광노동자들이 일한 곳일 수 있다.

수감 중 사망과 비밀처형

공개처형이 아닌 수감 중 사망 정보도 2018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여 20건을 기록하

였고, 일부는 한 번에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들이었다.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은 진술들로 분류하였지만, 20건의 정보 중 위치좌표를 확보해둔 것은 3건이다 (부록 1, 도표 4 참고).

수감된 사람들은 흔히 구타와 고문을 당한다.

이 밖의 3건의 정보는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인데, 수감상태에서 당한 학대가 사망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진술자들은 수감시설에서 고문, 구타, 굶주림, 치료 없는 방치가 흔히 벌어지는데, 북한 사법당국은 어떤 수감자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면 수감 중 사망자 발생 상황을 회피하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망원인으로는 수감 중 겪는 가혹한 처우에 영양실조와 질병까지 겹쳐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적절한 치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특히 민감하거나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비밀처형한 경우에 관한 정보들도 종종 있었다. 안전부 소속 운전수였다는 한

중범죄 혐의자는 비밀처형될 수 있다.

남성은 1990년대 말 2명이 산 숲 속에서 비밀처형되었다고 하였다. 살인과 인신매매 혐의였는데, 처형 집행 전 재판은 없었고, 안전원들이 주변 경계를 썼다고 한다. 안전부에서는 혐의자 가족들에게 처형장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이다. 이 진술자는 함께 근무한 안전원들로부터 2010년과 2011년에 두 번의 비밀처형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 그에 따르면 살인이나 고리대금 행위, 국가재산 횡령 같은 중범죄 혐의자들은 비밀처형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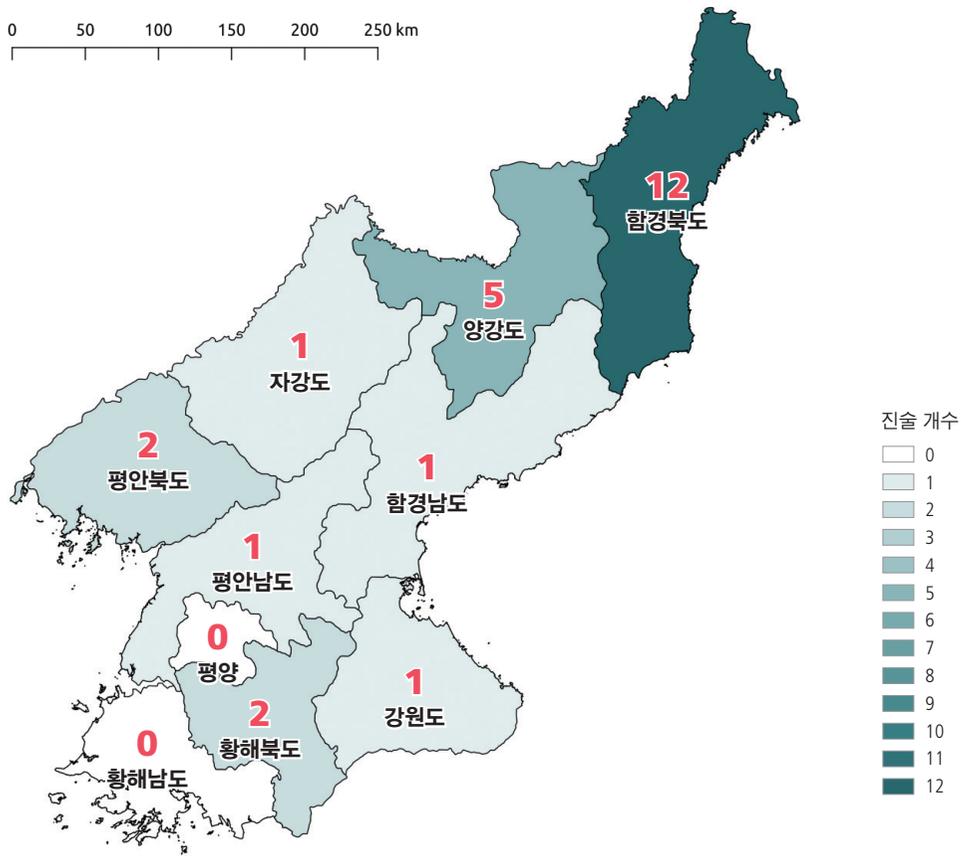
처형의 세부적 요소와 원인, 북한정권의 처형 관행을 줄이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개입 방법을 상세화한 개념도는 부록 3으로 제시한다.

시체 처리장소

시체 처리장소 진술 현황

우리가 위치를 찾고 지도로 만들고 있는 시체 처리장소는 북한정권이 공개처형했거나 수감되어 겪은 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밀처형한 시체를 처리한 곳들이다.

지도 5 시체 처리장소에 관한 진술 현황 (각 도별)



지도5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신빙성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것으로 25건을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한 정보로 분류하였다. 이 중 5건은 2구에서 9구 사이의 시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하는 곳들에 관해서이고, 2건의 정보는 10구 이상을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하는 곳들에 관한 정보이다.⁴² 25건 중 20건은 암매장 위치에 관한 정보들이다. 나머지 중 4건은 시체를 불태운 곳에 관해서인데, 모두 수감시설 내부나 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1건은 시체를 내던져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한 위치에 관한 정보였다.

누구의 시체인가?

병행한 설문 응답자의 16%는 북한정권에 살해되거나 처형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⁴³ 그들 중 일부는 어디로 끌려갔거나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이

설문 응답자의 16%는 북한정권에 살해되거나 처형된 가족이 있다고 하였다.

전혀 알 수 없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일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27%는 북한정권에 의해 강제실종된 가족 구성원이 있고, 이 중 83%가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응답하였다.⁴⁴

우리가 기록한 시체 처리장소 다수는 산비탈이나 산골짜기 등 외딴 곳들이지만, 북한정권에 살해된 피해자들의 시체가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매장지에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 매장위치를 분류하면서 한 가지 어려움은 1990년대 중 후반 대량아사 상황에서 수감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이 시체가 묻힌 곳

4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집단매장지의 개념 정의는 없지만, 이 용어는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쓰인다. 집단매장지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 유엔의 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전투나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사망자가 아닌 초법적 처형이나 약식 처형, 자의적 처형을 당한 피해자의 시체가 3구 이상 한 장소에 묻힌 경우 집단매장지(mass grave)로 정의한 바 있다. 집단매장지에는 특정한 기간 동안 한 장소에 여러 번 시체를 묻어 결과적으로 여러 구의 시체가 매장되는 것이 보통인데, 공중위생 때문에 시체를 빨리 묻으려고 하거나 기아사태나 대량학살 후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증거를 은폐하려는 욕구가 작용할 때에도 그러하다.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Bulletin (1996). Twin Tribunals ICTY9/10, 14-VIII-1996 (네덜란드 헤이그).

43. 이 매핑 프로젝트가 진행된 4년 동안 이 설문 문항에 응답한 총 486명 중 16%이다.

44. 이 매핑 프로젝트의 최근 2년 동안 이 설문 문항에 응답한 총 233명 중 27%이다.

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지난 4년 중 최근 2년의 조사에서는 안전원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일반주민들이 매장에 이용하는 산으로 옮겨 대량매장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의 초점은 아사한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에 반영한 결과에는 아사 피해자들의 시체 처리장소는 포함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자의 27%는 강제실종된 가족이 있고, 이 중 83%가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시체 처리장소 위치

산지가 많은 북한의 자연환경은 도로가 없는 곳으로 시체를 옮기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시체 처리장소로 우리가 기록하는 곳들은 암매장지 외에도 시체를 불태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곳들을 포함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화장(火葬) 이용을 늘리도록 수 년에 걸쳐 지시했지만, 시설과 유류 부족으로 화장이 보편화될 수 없었다. 2011년 김정은이 권력을 쥔 이후로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산에 깨알 같이 쉽게 보이는 묘비나 봉분들을 “나라 망신”이라며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⁴⁵ 그러나 묘비나 봉분을 없애라는 지시는 김정은 집권 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다. 2012년에 북한을 떠난 한 탈북민은 김정일이 현지도 나온다고 산기슭의 묘지들을 모두 없애고 원래 자연상태처럼 돌려놓는 작업에 지역주민들이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⁶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다수는 북한에서는 처형되거나 당국 관할 아래에서 사망한 사

45. 최송민, “北주민, 야밤 소달구지에 시체 싣고 산에 오른다는데,” 데일리엔케이, 2015년 4월 30일, <http://www.dailynk.com/北주민-야밤-소달구지에-시체-싣고/>.

46. 이 진술은 이 매핑 프로젝트 밖의 다른 탈북민들의 경험담 설명으로도 뒷받침되었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한 탈북민은 김일성의 교시를 대형 선전구호로 산 위에 설치하기 위해 무덤들을 옮기는 노동에 동원된 경험을 소개하였다. 아직 완전 부패하지 않고 남은 살점을 유골에서 떼어내는 작업은 이런 일을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했고, 술을 마시고 작업했다고 한다. 이러한 두 사례 경험담이 담긴 인터넷 방송은 배나TV, “[탈북 선후배] 8회 - 장례, 제사, 탈북민 남한 정착, 북한 장례식, 고민, 북한, 북한이야기,” 유튜브 영상 (총 48분33초), 2017년 4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xJVjlsjHeSY>.

람의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아무 표시 없이 암매장하거나 골짜기에 던져버리는 등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진술하였다.

당국에 살해된 시체는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직접 목격한 경우 등으로 살해장소와 시체 처리장소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진술도 꽤 나왔다. 두 부류의 장소간 연계성을 뒷받침한 한 진술자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것이 네 번이라고 하였다. 그 중 한 번은 공개 처형으로 죽은 4구의 시체를 직선거리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까지 차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시체를 땅에 묻는 작업을 맡은 다른 안전원들이 암매장을 진행하였고, 그런 일을 하는 안전원을 “기호성원”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 1미터 깊이 구덩이를 파둔 상태였다고 한다. 6명의 안전원들이 4구의 시체를 한꺼번에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는데, 이 과정은 2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위성지도상으로는 처형장소와 암매장 장소 사이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공개처형 장소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처형도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른 진술자들로부터도 위치좌표가 확보되고 신빙성 높은 출처정보가 있는 진술들을 추가로 받았는데, 공개처형 장소와 시체 암매장 장소가 같은 곳이었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이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에서 시체 처리방법에 관한 몇몇 정보들도 기록하였다. 수감자가 가혹행위, 굶주림, 질병, 사고나 처형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수감자들이 종종 동원되어 여러 방법으로 암매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큰 구덩이를 파고 시체 여러 구를 한꺼번에 묻는 방법이 포함된다.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한 명은 이러한 암매장을 보조하는 일에 동원된 적이 있는데 3구의 시체를 “한

수감시설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이 종종 동원되어 여러 방법으로 시체를 암매장한다.

47.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1년 보고서에서 일부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서는 점점 공개처형이 줄어들었고, 이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외적 시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공개처형 대상자들을 비밀처형의 대상으로 돌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추후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윤여상 외 (2011), 482쪽.

사람 키 정도 깊이”의 큰 구멍이 한 곳에 묻었던 일을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교회소에 수감되었던 또 한 명은 다른 남성 수감자들이 시체를 한 시체 저장창고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 창고는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차있어서 다른 곳에서 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감시설에서 시체처리 보조로 동원된 적이 있다는 진술자들이 있었는데, 몇몇 경우에는 그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술이나 음식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 진술자는 젊은 수감자들이 시체처리를 보조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편인데,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거리교회소에 수감되었던 여러 명의 진술기록을 모아보면 시체처리에 쓰이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여러 번 언급되는 한 곳이 “불망산”이다.⁴⁸ 불망산은 시체를 소각하고 남은 뼈들을 쌓

여러 진술자들은 시체처리에 쓰이는 한 곳으로 “불망산”을 언급하였다.

아놓은 곳 또는 교회소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시체를 태우는 곳 등 다양하게 묘사되었고, 지목하는 지점은 진술자들 간에 다르기도 하였다. 한 명은 불망산을 교회소 건물 가까운 위치였고, 타고 남은 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으며, 크기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무덤”과 비슷했다고 묘사하였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을 창립하기 전에 오랫동안 탈북민들을 인터뷰한 우리 조사팀의 한 명은 한반도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불리는 장송곡 가사 중에 “북망산”이라는 비슷한 장소명칭이 등장하는데, 망자의 시신을 묻는 북쪽의 신성한 어느 산을 뜻하는 것으로 통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터뷰한 탈북민들이 해당 교회소에서 시체들을 쌓아 불태우는 곳을 불망산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단어 “불”과 장송곡 노랫말의 북망산에서 “망산”을 결합한 단어로 구전되고 있는 것이 “불망산”이라는 명칭의 유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도 6은 이 조사에서 확보한 전거리교회소 관련 데이터 중에서 4명의 진술자가 불망산 또는 시체 소각 장소로 지목한 위치 4개를 보여준다. 도표 2는 7명의 진술자들이 제공한 정보인데 모두 불망산에 관한 정보이거나 전거리교회소에서 시체를 소각한 곳에 관한 것이고, 여

48. 특정명칭인 “불망산”에 관해서는 2016년 데일리엔케이 보도에서도 묘사된 바 있다. 전거리교회소 수감경험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공연히 알려진 장소와 명칭이므로, 이 보고서에도 장소명을 특정하기로 하였다. “전거리교회소, 시체 태우는 냄새 맡으며 밥 먹는 게 일상”, 데일리엔케이, 2016년 11월 1일, <https://www.dailynk.com/전거리교회소-시체-태우는-냄새-맡으/>.

러 측면에서 교차하는 설명을 보여준다.

도표 2의 정보들 중 4건에서는 지도 6에서 볼 수 있듯이 시체들이 소각되었다는 장소의 위치좌표가 확보되었다. 다른 3건의 정보에서는 시체가 옮겨진 곳, 소각 후 남은 뼈더미를 본 곳, 시체들을 소각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곳으로 진술이 다양하였다. 4건에서는 불망산이 언급되었는데, 이 중 2건에서는 위치좌표가 확보되지 않았다. 도표 2에 정리한 정보들은 장래에 현장수사에서 규명할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불망산이 항상 동일한 한 장소인지, 진술하는 사람들이 불망산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열고 탈북민들로부터 신고받은 사례 중에서 불망산에 관한 진술이 몇 건 있는데, “쇠로 만든 큰 로”에 시체를 넣고 태웠다는 특이한 묘사가 있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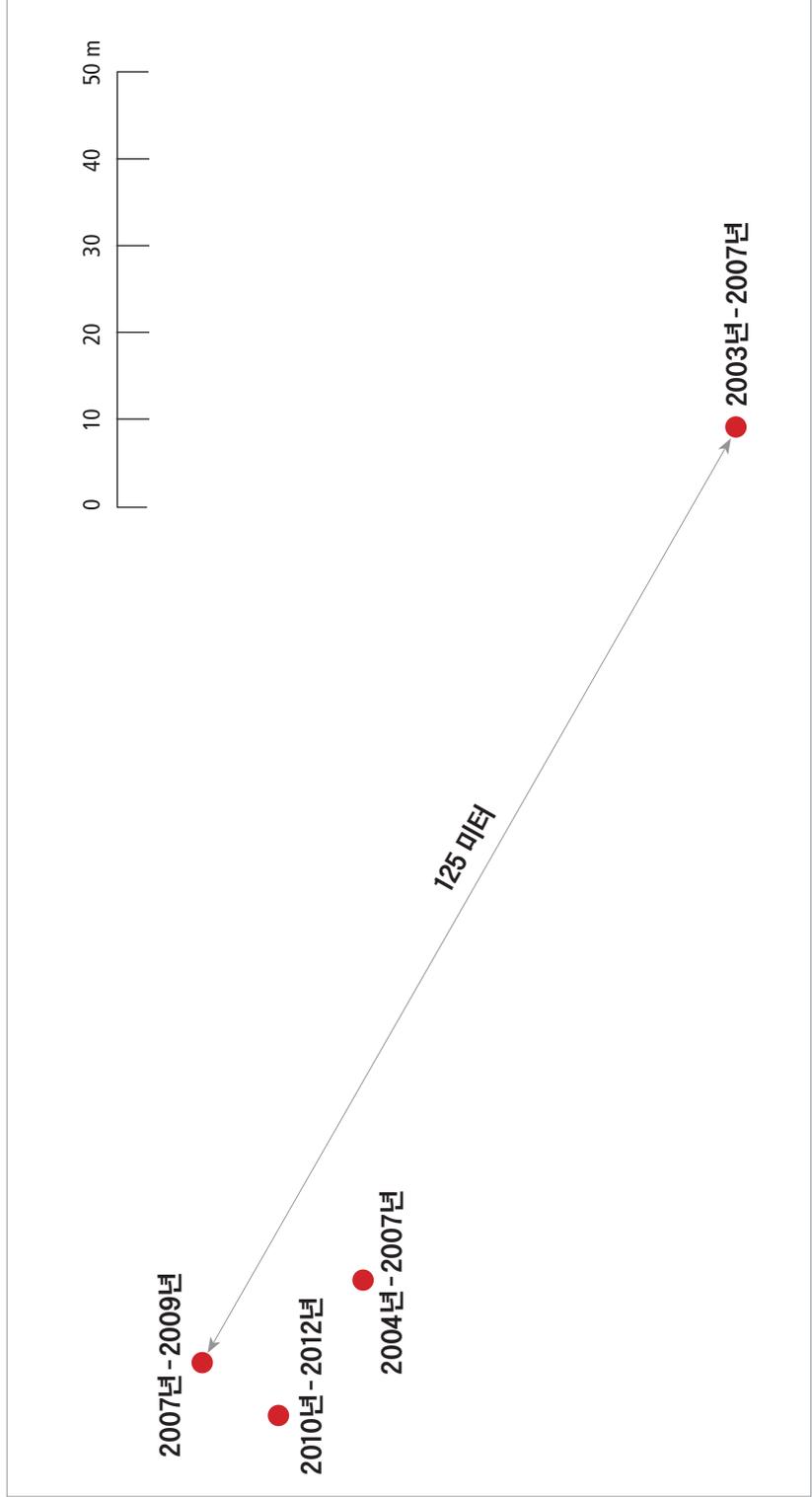
49. “시신들을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시체를 태우는 쇠로 만든 큰 로 속에 집어넣고 장작불로 태우는데 제대로 태우지 않아서 채 타지 않은 사람 뼈가 로 속에 수북히 쌓여 있음. 시체를 태운 잿가루를 비료처럼 밭에 재처리하여 뿌려진 곳에서는 호박, 무, 배추 등 야채가 잘 자랐음”,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서울, 2012), 98 쪽.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1003&pagesize=10&searchcategory=%EC%9D%BC%EB%B0%98%EB%8B%A8%ED%96%89%EB%B3%B8&boardtypeid=17&boardid=604801>

도표 2 시체 소각장소 정보 교차비교

세부정보	진술자 1	진술자 2	진술자 3	진술자 4	진술자 5	진술자 6	진술자 7
위치	전거리교회소 인이나 근처						
지목한 위치 (좌표)	○	○	○	○	x	x	x
묵려하거나 들은 시기	2003-2007년	2007-2009년	2010-2012년	2004-2007년	2010-2011년	2009-2011년	2007-2009년
"불명산" 직접 언급	○	x	x	○	○	○	x
특정적 기억	정보 없음	시체를 불태우는 곳까지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수감기간 동안 시체 타는 냄새를 맡았다.	시체를 저장하는 곳을 보았다. 수감기간 동안 시체 타는 냄새를 맡았다. 불태우기 전에 시체를 토마반다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시체를 산 속에 불태우는 "불명산"까지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시체를 태우는 것을 보았다. 시체를 태운 후 남은 재들을 보았다.	교회를 건축하는 시체를 저장하는 곳이 있었다. 법자 수감자들이 수레를 이용하여 시체들을 불태우는 곳까지 옮겼다. 불태우는 곳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 교회소 건물 근처에서 불태우고 남은 뼈 더미를 보았다.	불태우기 전에 시체를 토마반다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들었다. 다른 수감자들이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수감자들의 시체는 한꺼번에 수레에 실려 산속으로 운반된다. 산속에서 시체들을 불태운다.
정보 출처 유형	시체치리에 동원되었던 사람에게 직접 들음	소각장소 직접 목격	다른 사람에게 들음	소각장소 직접 목격	시체 저장소와 뼈 더미 직접 목격. 소각장소는 직접 보지 못함.	시체 운반 직접 목격. 소각장소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음.	소각장소 직접 목격
조시팀 장정판단	같은 장소로 보임	같은 장소로 보임	같은 장소로 보임	같은 장소로 보임	판단 보류	판단 보류	판단 보류

지도 6 전거리교화소 시체소각장 “불망산” 위치에 관한 진술

참고: 시기(년, 월) 정보는 각 진술자가 수감되었던 기간



드문 경우로 공개처형한 시체를 암매장이나 소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몇몇 사례도 있었다. 1960대에 벌어진 일로 안전부가 이 지역 화학공장 근처에서 유독성 물질로 처형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산 채로 공장의 염산성 폐수에 던져 넣어 사망하게 했다는 정보이다. 당시 당간부로 일했다고 밝힌 이 진술자는 동료들로부터 이 공장에서 처형과 시체처리에 염산을 사용한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의 조사에서는 2000년대 말 비법거래 혐의로 처형한 시체 3구를 화염방사기로 소각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자동소총으로 여러 차례 사격한 후, 시체들에 기름을 끼얹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붙였다는 진술이다. 소각하고 남은 뼈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안전부가 수거해갔다고 이 진술자는 설명하였다.⁵⁰

50. 북한전략센터(NKCS)는 최근 보고서에 “고사총을 난사하고 사체를 탱크로 짓뭇개는 방식의 사형”에 관한 증언을 수록하고, “육체적 생명 박탈을 넘어서는, 북한 형법 조문에 없는 사형” 방식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식, “북한 엘리트 처형 및 숙청: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통한 김정은 집단학살사건 조사” (2019), 76쪽.

정권에 의한 살해와 암매장의 2차적 영향

정권에 의한 살해가 가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해당 사건이나 가족의 상실로만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한 경험은 악몽, 불면증, 식욕부진 등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해당공동체 차원에서도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한 경험은 악몽, 불면증, 식욕부진 등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주민들의 행동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정신적·사회문화적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로 국가적으로 신격화한 지도자 숭배 외에는 모든 형태의 의미 있는 종교적 활동을 제거해왔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전통적인 생각과 장례 의식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망자의 기일을 기리는 전통의식으로 조상의 혼이 사후에도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염원하고, 가까운 사람의 생전의 삶을 기억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의 시체를 어떤 곳에 매장할지 정할 때에는 전래되는 풍수지리에 따라 유가족 또는 가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믿는 곳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⁵²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후에도 망자와 소통하고 후세들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중 특별한 날에 사진이나 귀중한 유품, 음식과 술을 무덤이나 납골당으로 가져가 고인을 기리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³ 한 진술자는 북한을 떠나기 전에 사망한 어머니를 기리는 전통적인 3년상을 마치기로 결심하고 탈북 결정을 늦추었는데, 3년간 전통의식을 마칠 때까지는 때마다 어머니의 무

51. 다른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공개처형을 본 후 “일주일 정도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등의 목격자 진술이 상당하다. 앞의 보고서, 126쪽.

52. 영국 셰필드대학교 Markus Bell과 이메일 교신, 2019년 3월 25일.

덤을 방문하는 것을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반도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망자는 비록 사망했더라도 후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있고, 망자의 사후를 살피고 적절히 장례하는 것은 후대들에게 일종의 정의 문제”가 된다.⁵⁴ 게다가,

이유가 무엇이건 집단매장지를 만드는 것은 몇몇 법과 규범에 위배되고 현대로 이어져온 문화적 전통들을 훼손하므로 피해가족들의 타당하고 문화적인 반대 목소리를 막은 측면이 없는지 수사해야 타당하다.⁵⁵

관행처럼 처형하고, 수감 중 사망을 방지하며, 유가족들의 참여나 동의 없이 시체를 처리하는 북한정권의 행태는 유가족들이 망자를 존엄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망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심지어 정말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한 진술자는 오빠가 수감시설에 있는 동안 공개처형되었지만, 처형 이후 꽤 시간이 지나 이웃주민이 알려주기 전까지 처형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1990년대 말에 한 수감자가 수감 중 사망하고 가족 모르게 암매장된 다른 사건에서는 유가족이 지역 보안원들에게 매장된 위치를 묻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가족의 끈질기게 묻자, 결국 수감 중 병에 걸려 사망했고 어느 산속에 암매장했다고 안전원이 귀뜸해 주었지만, 구체적인 암매장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공개처형의 추가적인 영향인 유가족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은 유죄 결정을 받은 대부분

53. Markus Bell과 이메일 교신. 이 조사의 진술자들에 따르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관을 쓰는데, 나무관은 약기공장에서 생산되며, 공장 노동자들의 주요 수입원천이 된다. 북한 원화로 13만5천원(미국통화150달러)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 어렵고, 많은 주민들은 대용으로 마대자루로 시신을 둘러서 매장하는 경우가 많다. 매장한 자리는 전통적인 봉분을 만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 또는 돌로 된 표석을 사서 표시한다고 한다. 표석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유가족과 직장동료, 이웃들이 종종 매장 과정을 돕는다. 그러나 지정된 공동묘지 지역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공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가까운 산 어디에든 묻는다고 한다. 새로 찾은 곳 주변은 마을 사람들의 묘지로 곧 채워지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 이후의 사망자 시신까지 같은 곳으로 모아서 매장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54. Pereira (2019).

55. Guyomarc'h and Congram (2017).

의 경우에 벌어진다. 이 조사에서 몇몇 사례로 유가족과 아동들이 가족이나 친척이 처형된 후 시골이나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한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인신매매 혐의로 처형되고 아버지는 병으로 사망해 부모를 잃은 2명의 소학교

어머니가 인신매매 혐의로 처형된 2명의 소학교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산골로 추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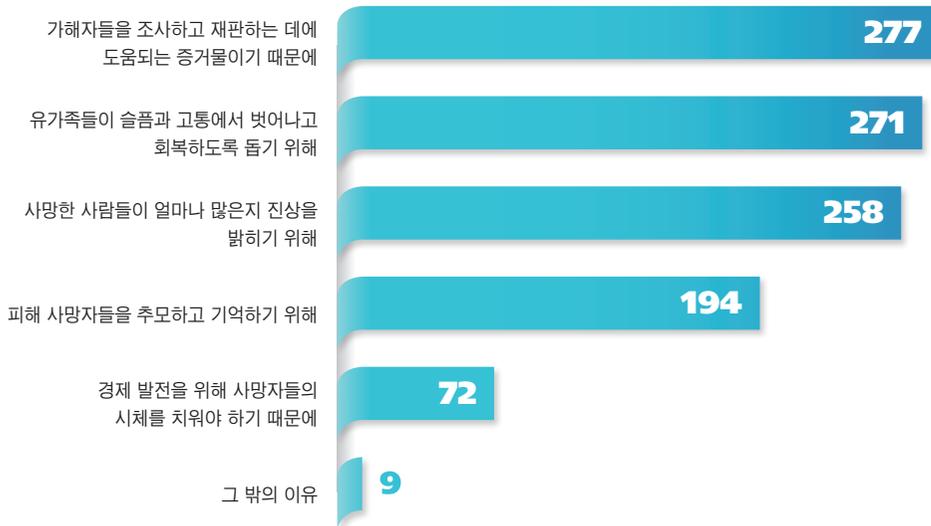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산골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북한정권이 각 가정을 출신계층 또는 성분으로 구분하고 등급을 낮추거나 하는 의도는 당국이 금지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된다는 공포심을 사회에 유지하려는 것임을 더욱 뒷받침한다.

북한정권의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광범위하며,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사회 구석 구석마다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러한 영향은 관련정보를 더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들로 이어져 장래에 암매장 위치를 찾아내는 일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살해 당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 조사에 병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2%의 응답자가 북한체제가 전환되면 암매장 장소들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복수로 이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았다.⁵⁶

56. 편의표집 방식으로 인터뷰한 466명의 설문응답 결과이다.

차트 4 유해발굴 지지 응답

북한체제가 전환되면 시체가 묻힌 곳을 찾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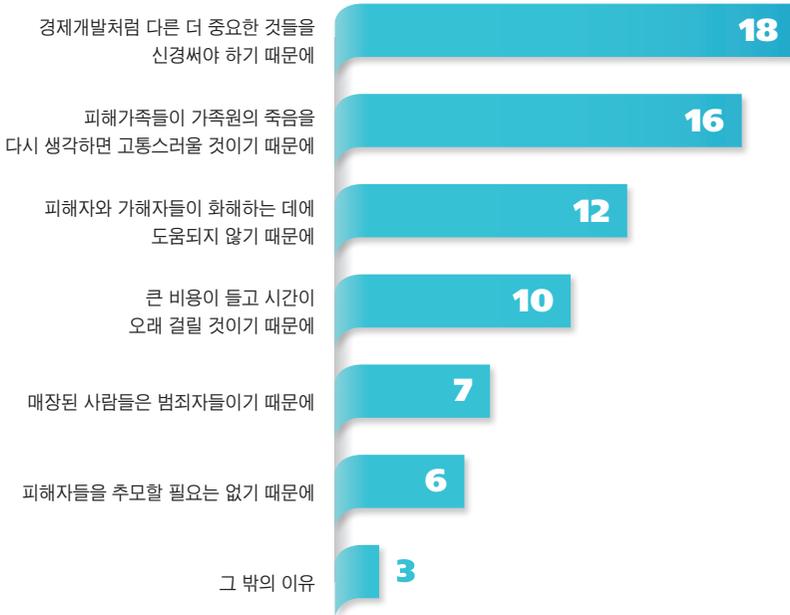


우리는 북한당국이 가족을 죽게 하고 암매장한 곳을 찾아내고, 현장을 수사하며, 유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문 참여자들의 개별적 의견도 최근부터 얻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 본다고 응답하였다. 유해를 찾고 현장을 수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유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⁵⁷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조사를 이 매핑조사와 병행하여 계속할 것이고, 축적하는 데이터를 외부의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더 나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57. 편의표집 방식으로 인터뷰한 사람들 중 이러한 문항들에는 지금까지 85명이 응답하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설문을 계속할 것이다.

차트 5 유해발굴 반대 응답

북한체제가 전환되면 시체가 묻힌 곳을 찾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문서증거 보관 장소

이 매핑 프로젝트는 인권침해 증거가 문서로 보관되어 있을만한 장소들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이 부류의 정보들은 장래에 북한정권에 대한 사법절차 및 역사적 진상 규명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2017년 첫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였듯이 이 부류의 정보에는 지방 단위까지 인민보안성 각급 사무실(주민들은 안전부로 지칭), 국가안전보위성 각급 사무실(주민들은 보위부로 지칭), 군대와 행정기관 사무실들의 위치정보가 포함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기록관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지는데 특히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한 차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행동은 공적 기록물 상 가족구성원들의 기록과 연계 관리되고, 특히 정치적 죄로 간주되는 경우 일제 식민지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좌제’ 관행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적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자연적인 사망이건 다른 이유이건 주민들의 사망 경위도 북한당국에서 모두 기록한다. ‘정치적 혐의’나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과정으로 처형됐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도 북한당국이 관리하는 이유는 처형된 사람들과 생전에 가까웠거나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철저한 감시 체계로 인해 북한에서 벌어져온 불법적인 살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 기록은 북한의 각급 기관들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위성사진을 이용한 인터뷰 중 참여자들이 대체로 쉽게 지목한다. 우리는 훗날 인권침해를 뒷받침할만한 문서기록 관리가 북한체제 전반에 체계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옛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그러했는데, 비밀경찰 조직이었던 슈타지 기록물은 독일의 전환 이후 재판과 진상규명에 중요하게 쓰였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들의 위치를 파악하

지도 7 함경북도 회령시 내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예시)



고 기록하여 장래에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면 현장에 남은 문서기록물을 빠르게 확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도 7은 함경북도 회령시를 보여준다. 이 지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서쪽이 중국과의 국경이다. 이 지도는 회령시에서 정권에 의한 살해와 시체 처리 등에 관련된 문서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을만한 위치들을 담고 있다. 표시한 모든 지점은 각각 최소 4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곳들이고, 한 곳은 12명 이상 지목하였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이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처럼 이 부류의 위치조사 산출물을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적이고 더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원천공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⁵⁸ 북한당국의 현장훼손이나 기록인멸 우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민감한 위치좌표들까지는 당장 공개하지 못하지만, 지도 7의 문서보관 추정지 위치좌표 데이터는 <https://en.tjwg.org/mapping-project-north-korea/>에 게시하였다. 2017년 첫 보고서에 담았던 량강도 혜산시 내 문서보관 추정지 위치좌표 데이터도 함께 게시하였다.

58. Wolfenbarger는 “오늘날 연구결과가 공개되는 방식을 보면 연구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같거나 관련된 주제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비슷하거나 뒷받침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진상조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와 연구를 하는 누구에게나 불안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검토 체계를 갖춤으로써 결과물로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권조사기록에서는 정보출처와 분석기법, 데이터에 관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앞의 논문 (2016), 16쪽.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고 5년이 흘렀지만, 북한정권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행동은 아직 찾기 힘든 상황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남한과 북한, 미국 사이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인권조사기록 단체와 기관들은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계속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다.⁵⁹ 조사기록 활동은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계속되는 억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꺼릴 때 특히 더욱 중요해진다. 이 매핑 프로젝트에서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관해서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연루기관들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조사결과의 애드보커시 활용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구성원들은 한국과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와 세미나, 강연 등에서 이 조사와 연구결과에 관해 수시로 발표하고 한반도 차원의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를 넓혀가고 있다. 이 조사로 파악되는 바들은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독립전문가그룹과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를 위한 NGO 보고서로 제출하였고,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정기적 면담에 쓰고 있으며, 그 밖의 유엔 절차와 외국 정부들에 보내는 관련주제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을 조성하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경과와 관련주제들에 관한 한국과 국제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 문단27.

한국 단체·기관들과의 협업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인권조사기록과 애드보커시에 초점을 둔 새로운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여러 단체·기관들과 협업해왔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협업하고 있고, 한국 내 다른 여러 민간단체들과도 공동으로 시민사회 주도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사건에 관한 제반 기록물과 후속정보를 함께 모아 사건별, 개인별로 프로파일링하고 여러 사법절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향후 가해자 책임추궁 과정과 현재의 애드보커시에 쓸 수 있도록 조사기록 방법을 함께 향상하고 구축하는 정보들의 활용도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34/24에 따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책임규명팀을 구성하고 인권침해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고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는 중앙화된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에 주목한다.⁶⁰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여러 기관들과 출처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데이터통합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탈북민들과의 소통과 탈북민 참여

2019년 2월,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를 상세히 담은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⁶¹ 450여명의 탈북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인권침해,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피고, 지난 일들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탈북민들과 북한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돕고, 북한이 독재로부터 전환되는 미래를 구상할 때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촉진할 방법에 관한 우리의 견해도 제시하였다.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현재 활동과 결과의 향후 활용방향에 관해 탈북민들과 더 긴밀히 의논하고 협력할 것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북한정권의 폭력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때가 오

60.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2017년 2월 13일), 문단80(f)와 95(c), http://www.ohchr.org/Documents/Countries/KP/A_HRC_34_66_Add_1.pdf (영어), https://seoul.ohchr.org/EN/Documents/2016/GIE%20A-HRC-34gf%20add_Kor.pdf (한글).

61. 전환기정의위킹그룹 (2019).

면,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당사자로서 임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기술역량 강화와 기술전문가들과의 협업

장래에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고 과거사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의 정치적 전환이 일어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데이터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을 수사를

뒷받침할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생사소재를 추적하는 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래에 북한지역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현재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사무국에 쌓이고 있는 정보와 GIS 활용 지식이 드론을 이용한 더욱 신속한 현장사진 획득을 뒷받침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목격자 증언들도 암매장 장소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실종되고 사망한 위치를 “마지막으로 직접 본” 진짜 목격자들의 진술 외에도, 우리가 조사하는 장소들에 관한 용어, 문화, 제도적 관행과 관련사건들에 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식은 무슨 일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일어났던 것인지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데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⁶² 인권분야에서 GIS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인권조사기록 그룹들에게 “공간적으로 사고하고... 사람들이 시체를 다룰 때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하는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⁶³ 이는 전통적 방식의 인권조사기록 인터뷰 문항들을 공간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거리와 고도, 주변의 두드러진 자연·인공 지형지물뿐만 아니라 소리나 냄새처럼 찾아내고자 하는 장소에 관한 단서가 될만한 정보를 얻는 문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전적으로 증언진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활용하여 “알려진 시체처리 장소들 간의 공통적 패턴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⁶⁴

더 나은 방법을 활용하여
“알려진 시체처리 장소들
간의 공통적 패턴이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62. Congram, Kenyhercz, and Green (2017), 262쪽

63. 앞의 논문.

64. 앞의 논문.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공식적 사법절차를 짚어보면, 증거채택에서 개별국가 재판소들보다 더 큰 재량을 행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지리공간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도 지리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다.⁶⁵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 기술 활용 측면을 드물게 언급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영향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ICC와 특별법정, 그 밖의 인권재판소들은 지리공간정보와 이 분야의 전문가 증인 활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관련증거의 활용 정도는 사례마다 다르다. 이는 지리공간적 증거가 전통적인 증인진술을 보완하는 것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⁶⁶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인권센터 등 몇몇 기관들은 ICC 검찰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에 관한 수사에 원격감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설득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전미과학진흥협회(AAAS)는 원격감지분석 기술의 능력을 소개하고 진상규명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와 함께 실무훈련을 진행하였다.⁶⁷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환기정의위킹 그룹은 후속조사 단계들에서 위치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등의 GIS 활용법을 발전시켜 공간적 관계 분석을 새로이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와 협업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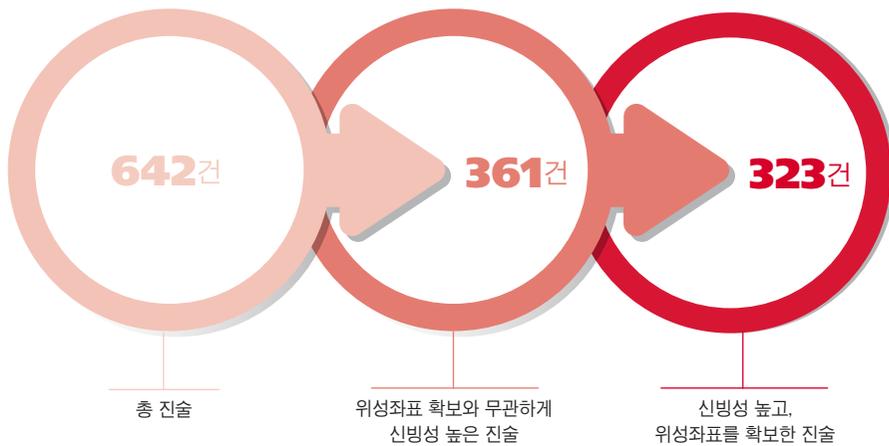
65. Wolfenbarger (2016), 5쪽.

66. Harris, Theresa L. et al. *Geospatial Eviden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Techn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Report (New York and Washington: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8), <https://www.aaas.org/sites/default/files/s3fpublic/reports/Geospatial%20Evidence%20in%20International%20Human%20Rights%20Litigation.pdf>. 12쪽, 15쪽, 31쪽; Ana Cristina Núñez M., *Admissibility of remote sensing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ibunals Innovations in Human Rights Monitoring Working Paper*. (Amnesty International USA, 2012), <https://www.amnestyusa.org/pdfs/RemoteSensingAsEvidencePaper.pdf>. 8쪽, 20쪽.

67. Wolfenbarger (2016), 5-6쪽.

부록 1: 데이터 현황과 표

데이터 현황 1 처형장소에 관한 총 진술



참고: 총 642건의 진술 중, 261건의 정보출처 신빙성 평가는 이 조사의 다음 단계에 진행. 20건의 진술은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

도표 3 공개처형 진술 현황

처형방식	회당 처형규모	
	10명 미만	10명 이상
교수형	25건	-
총살형 (총살부대 이용)	275건	19건
유독물질 사용	1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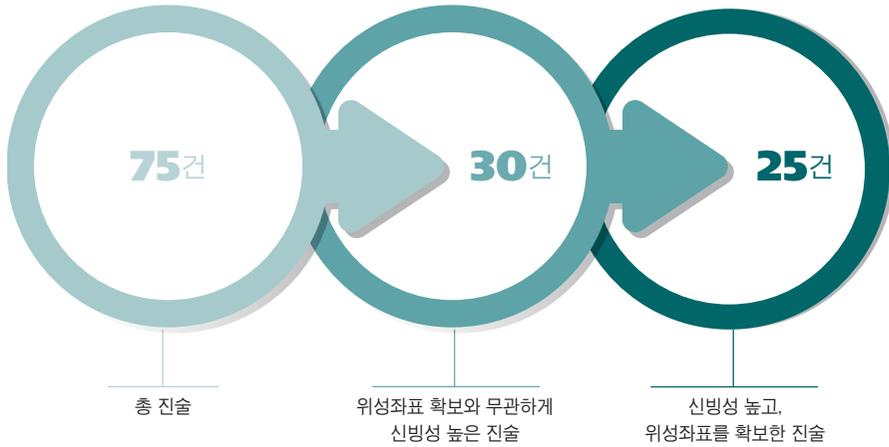
참고: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진술만 이 표에 반영. 같은 공개처형에서 교수형과 총살부대를 이용한 총살형이 함께 벌어진 경우가 2건이어서 처형방식으로는 별건으로 분류. 따라서 처형방식 기준 구분표에서는 총 318건의 사건정보보다 많은 320건으로 분류.

도표 4 수감 중 사망 진술 현황

사망경로	사망유형			
	그 밖의 사망	영아살해	강제노동 중 사고사	자살
산채로 암매장	-	1건	-	-
질병	2건	-	-	-
질식	-	-	-	1건
사망하도록 방치	-	1건	-	-
구타/고문	3건	-	-	-
영양실조/굶주림	5건	-	-	-
치명적 타격상	-	-	1건	-
알 수 없음	7건	-	-	-

참고: 처형을 제외한 수감 중 사망 분류임. 총 20건 중 1건은 영양실조/굶주림과 질병이 복합되었다는 진술에 따라 사망경로와 유형 구분으로는 총 21건으로 분류. 수감경험자인 진술자 다수는 위성지도상에는 사망위치를 지목할 수 없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였음. 3건의 진술에서만 위치좌표를 지목함. 수감경험자들이더라도 낮은 곳에 수감되었거나 트라우마 영향으로 위치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해졌을 수 있음.

데이터 현황 2 시체 처리장소에 관한 총 진술



참고: 45건의 진술은 현 단계에서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

도표 5 시체 처리장소 진술 현황

처리장소 유형	기록 현황
암매장	20건
소각	4건
시체를 내던져 버리거나 방치	1건

참고: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진술만 이 표에 반영.

부록 2: 국제인권법 위반사항

문서	위반 규정
세계인권선언(UHDR):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 제217호로 채택	제3조 - 생명권(예: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및 국가 관할 하의 학대에서 초래된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사망)
	제3조 및 제9조 - 신체의 자유 및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예: 법에 위배되거나 인권 행사 때문이거나 공정한 재판권 침해에 따르거나 불법적 차별을 근거로 한 처형 전의 구금)
	제3조 - 신체의 안전(예: 수감자 사망을 초래하는 간수의 학대 예방의 실패)
	제5조 및 제25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와 본인과 건강의 건강과 안녕을 누릴 권리(예: 가족과 주민의 공개처형 관람 강제)
	제5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예: 구금 중 고문, 공개처형, 처형 방법)
	제6조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예: 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의 비밀 구금 및 처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권리(예: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 없는 사형 선고와 처형)
	제11조 제2항 - 죄형법정주의(예: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범죄에 따른 사형 선고 및 집행)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 본인의 나라를 떠나고 돌아올 권리 및 비호를 구할 권리(예: 송환된 탈북자의 월경죄 처형)
	제18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예: 기독교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 범죄"에 따른 처형)
	제19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예: 비판적 발언이나 한국 영상물의 소지나 유포에 따른 처형)
	제20조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예: 지하교회 구성원의 처형)
제21조 - 정치 및 공적 직무에 참여할 권리(예: 정책 실패 혐의에 따른 고위급 관리의 처형)	
제2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법적 평등과 비차별 권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문서	위반 규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81년 이후 당사국	제6조 제1항 - 생명권(예: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및 국가 관할 하의 학대에서 초래된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사망)
	제6조 제2항 - 가장 중한 범죄를 제외하면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예: 가족 절도, 한국 영상물 시청처럼 사람의 고의적 살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따른 사형)
	제6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 - 사형 사건 및 일반 사건에서의 죄형법정주의(예: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범죄에 따른 사형 선고 및 집행)
	제6조 제2항, 제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4조 제5항 - 권한 있는 재판소에서 내린 확정 판결 이외에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 효과적 구제를 누릴 권리;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 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공개할 권리; 무죄추정원칙; 범죄 혐의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한 신속하고 상세한 통고를 받고, 변호의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며,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자기에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소 보장;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예: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 없는 사형 선고와 처형)
	제6조 제4항 -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예: 관용을 호소할 기회 없이 사형 선고 직후 집행)
	제6조 제5항 -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 부과 금지 및 임신부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예: 아동 및 임신부의 사형 집행)
	제7조 및 제10조 제1항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 및 구금자의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예: 가족과 주민의 공개처형 관람 강제)
	제7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예: 구금 중 고문, 공개처형, 처형 방법)
	제9조 - 신체의 자유 및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예: 법에 위배되거나 인권 행사 때문이거나 공정한 재판권 침해에 따르거나 불법적 차별을 근거로 한 처형 전의 구금)
	제12조 제2항 - 본인의 나라를 떠날 권리(예: 송환된 탈북자의 월경죄 처형)
	제16조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예: 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의 비밀 구금 및 처형)
	제18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예: 기독교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 범죄"를 이유로 한 처형)
	제19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예: 비판적 발언이나 한국 영상물의 소지나 유포에 따른 처형)
제21조 및 제22조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예: 지하교회 구성원의 처형)	
제25조 - 정치 및 공적 직무에 참여할 권리(예: 정책 실패 혐의에 따른 고위급 관리의 처형)	
제2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 - 법적 평등과 비차별 권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문서	위반 규정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81년 이후 당사국	제10조 - 가족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제12조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예: 가족과 주민의 공개처형 관람 강제)
모든 사람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 결의 제3452(XXX)호로 채택	제3조, 제4조, 제5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및 예방 의무(예: 구금 중 고문, 공개처형, 처형 방법, 국가 관할 하의 학대에서 초래된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사망)
	제12조 - 사법절차에서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 사용 금지(예: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사형 선고 및 집행)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 제39/46호로 채택	제2조 및 제16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예방 의무(예: 구금 중 고문, 공개처형, 처형 방법, 국가 관할 하의 학대에서 초래된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사망)
	제15조 - 사법절차에서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 사용 금지(예: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사형 선고 및 집행)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 제47/133호로 채택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 강제실종의 금지 및 예방 의무(예: 비밀 구금 및 처형)
	제10조 - 공인된 구금 장소에 유치되고, 구금 이후 신속히 사법 관헌 앞으로 데려갈 권리 및 구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가족 제공(예: 비밀 구금 및 처형, 유해 비밀 처분)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 제61/177호로 채택	제1조 - 강제실종의 금지(예: 비밀 구금 및 처형)
	제17조 및 제18조 - 비밀 구금의 금지, 자유 박탈 중 사망시 사망 정황 및 원인, 유해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예: 비밀 구금 및 처형, 유해 비밀 처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1969년 1월 4일 유엔 총회 결의 제2106(XX)호로 채택	제5조 (b)항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 기원의 구별 없이 정부 관리에 의한 폭력 또는 신체적 피해로부터 안전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001년 이후 당사국	제12조 제2항 - 임신 관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여성의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1990년 이후 당사국	제37조 제1항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및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아동의 권리(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의 중국인 남성과 사이의 태아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문서	위반 규정
사형에 직면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세이프가드 모음: 1984년 5월 25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84/50호로 승인	제1항 - 치명적이거나 다른 극히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는 고의적 범죄 범위 내의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 부과(예: 가축 절도, 한국 영상물 시청 등의 범죄에 따른 사형)
	제2항 - 죄형법정주의(예: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범죄에 따른 사형 선고 및 집행)
	제3항 -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 부과 금지 및 임신부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예: 아동 및 임신부의 사형 집행)
	제4항 - 사형의 경우, 다른 설명의 여지가 없는 유죄 입증 요건(예: 강요된 자백 근거한 사형 선고 및 집행)
	제5항 - 모든 절차 단계에서의 충분한 법적 지원을 포함하여 적어도 자유권규약 제1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요건(예: 변호인 조력 없는 사형 선고 및 집행)
	제6항 - 사형 선고시 의무적 항소 절차(예: 항소 기회 없이 사형 선고 직후 형 집행)
	제7항 -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예: 관용을 호소할 기회 없이 사형 선고 직후 형 집행)
	제8항 - 항소 또는 감형 절차가 있을 때까지 사형 집행 금지(예: 법으로 허용된 항소 또는 선처 호소 절차의 허용 없이 사형 선고 직후 형 집행)
	제9항 - 사형 집행시 가능한 한 최소 고통을 가할 의무(예: 공개처형 및 처형 방법)

북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reaty.aspx?CountryID=47&Lang=EN

핵심 국제인권조약과 이행감시기구 현황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oreinstruments.aspx>

모든 사람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 결의 제3452(XXX)호로 채택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declarationtorture.aspx>

사형에 직면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세이프가드 모음: 1984년 5월 25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84/50호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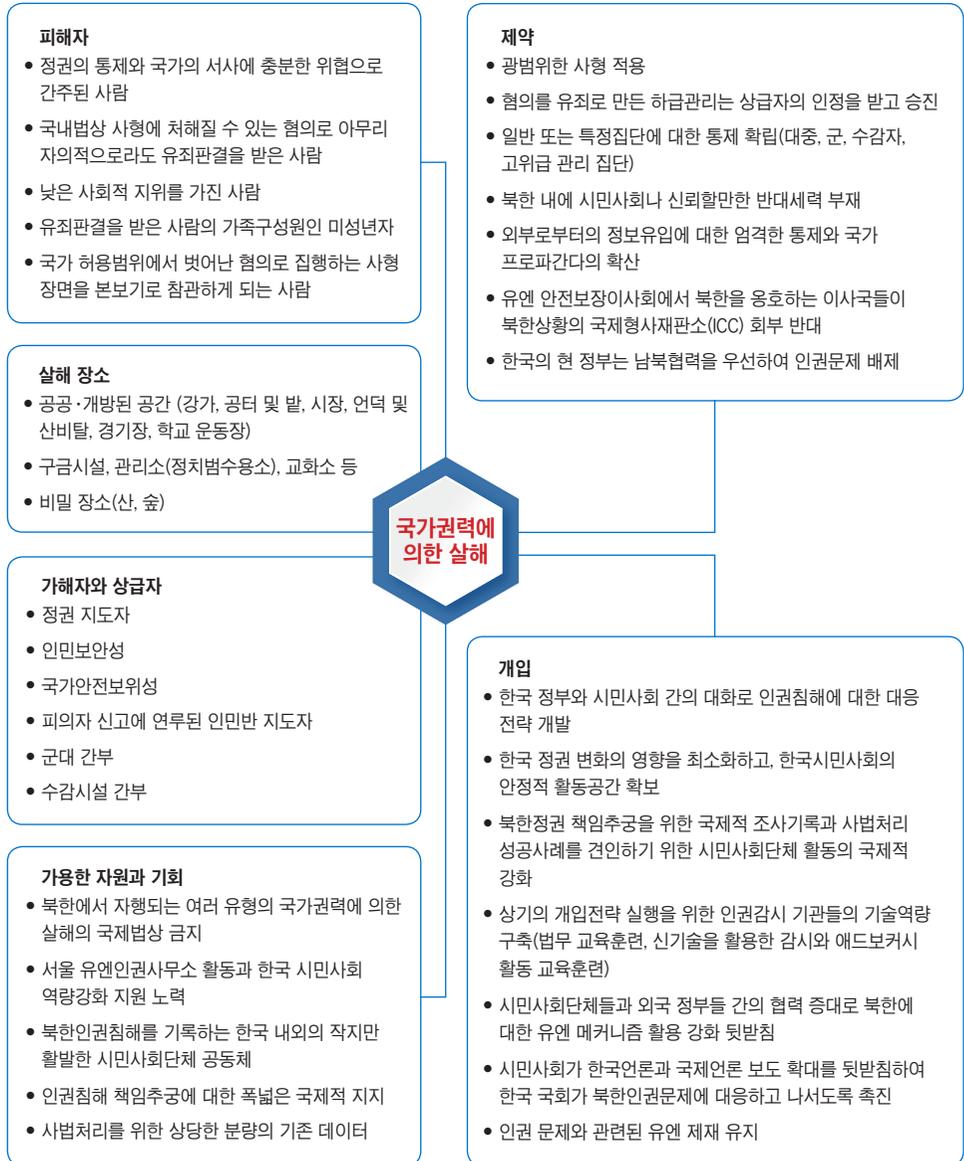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deathpenalty.aspx>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 제47/133호로 채택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enforceddisappearance.as>

부록 3: 북한정권에 의한 살해와 대응 개념도

국제앰네스티의 “Mapping for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매핑)” 개념도를 기초로 작성,
https://www.amnesty.nl/content/uploads/2017/01/mapping_for_human_rights.pdf?x54531





후원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upporting freedom around the world